

# 金正日 政權의 人權政策 變化展望

1995. 9

金 炳 魯(北韓研究室 責任研究員)

民族統一研究院

- 이 報告書는 民族統一研究院의 研究計劃에 依據한 自體 研究 結果임.
- 收錄된 內容은 統一問題研究 및 政策開發의 參考資料로 提供 되는 것으로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님.

民族統一研究院 北韓研究室

## 序 文

탈냉전 이후 인권문제에 대한 전세계적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고 있다. 냉전시기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실현을 우선적으로 주장하며 서구의 정치적·시민적 권리 보호에 대한 요구를 거부해 왔던 사회주의 국가들은 이제 대부분 서구식의 정치적·시민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인권의 보편성을 공감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북한을 비롯한 제3세계 개발도상국들은 여전히 자결권과 개발권을 내세워 서구식의 인권개념을 강력히 거부하고 있다.

북한의 인권문제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보다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며, 동시에 '인권문제'라는 거창한 슬로건보다는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협의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가 기존의 사회주의 인권정책의 변화의 유형을 분석하고 그 경험을 북한에 적용하고자 한 시도는 현실성과 구체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북한과 서방과의 관계가 개선되면서 북한의 인권문제가 조만간 중요한 현안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본 연구는 정책적 측면에서 시의적절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본다.

아무쪼록 본 연구가 대북 인권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해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연구자와 전문가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진행과정에서 많은 조언을 해주신 세종연구소의 이종석 박사님과 익명의 인권문제 전문가, 그리고 비판을 아끼지 않은 본 연구원의 여러 동료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본 연구는 1995년 9월 1일부터 1995년 11월 30일까지 세종연구소에서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세종연구소의 지원을 받았으며, 민족統一研究院 北韓研究室에서 출판되었다.

# 要 約

북핵문제 타결과 북·미관계의 개선으로 인해 김정일 정권 출범 이후 북한과 관련된 향후 국제적 관심은 인권문제로 귀착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최근 6~7년 동안 국내외에서 꾸준히 거론되어 왔으며, 북한은 인권문제가 체제유지와 밀접히 연관된 것으로 간주하고 인권문제에 대해 정치적 부담을 크게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북한 인권문제의 실상과 국제사회의 대북한 인권문제 제기 현황을 검토하고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인식 및 인권정책의 변화내용과 향후정책을 분석·전망함으로써 북한 인권상황의 실질적 개선은 물론 효과적인 남북관계 추진방향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 1. 社會主義 人權政策의 危機와 變化

사회주의 국가들은 인권의 보편성을 인정하지 않고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라는 생존권적 기본권을 우선적으로 주장하면서 자유롭고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는데서 가장 기본적인 정치적·시민적 권리보호를 도외시하였다. 그러나 탈냉전 이후 사회주의 국가들은 정치적·시민적 인권을 보편적 인권개념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제3세계 개도국들만이 발전

권과 인권의 특수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1976년 국제인권규약의 발효와 인권감시기구들의 확대로 사회주의권의 인권정책은 점차 정당성을 잃어가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국내외에서 제기된 인권문제에 대해 한편으로 이를 반박하는 성명 발표와 자국의 인권문제 부재 천명 및 대내통제를 강화하는 등 강경책으로 대응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사회의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압력을 피하려는 이중전략을 구사하였다.

사회주의 인권정책을 변화시킨 요인은 우선, 국제기구 및 국제인권단체들의 활동을 통한 변화를 들 수 있다. 러시아와 동독의 경우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와 UN 등 집단안전보장체제 내에서 인권문제를 정치군사적 협상 및 경제협력과 병행함으로써 실질적인 결실을 얻을 수 있었다. 동시에 사회내의 이질적 혹은 갈등집단의 인권문제를 거론함으로써 효과적인 인권개선이 이루어졌다. 러시아의 경우에는 유태인이라는 이질적 민족집단이 인권문제의 촉발요인이 되었는데 가하면 동독의 경우는 서독에 흩어진 이산가족이 이질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중국의 경우와 같이 인권운동조직과 같은 국내의 체제저항세력과의 연계 속에서 효과적으로 변화를 유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 2.北韓의 人權實態와 國際社會의 對北韓 人權問題 提起 現況

북한은 자주권, 생존권, 평등권, 발전권을 기본적 인권으로 간주하고 있어 사회주의 인권개념과 제3세계의 인권개념을 혼합·채택하고 있다. 북한 인권정책은 첫째, 김일성교시와 「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원칙」 및 「조선로동당강령」 등이 헌법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인권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강한 정치성을 띠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둘째, 집단주의 원칙을 공민의 권리와 의무로 규정하고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개인의 이익과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 독특하다. 셋째, 정치적·시민적 자유보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권과 같은 인권보호의 물질적 기초를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헌법에 언론, 출판, 결사, 집회, 군중대회 및 시위의 권리, 신앙의 자유,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의 원칙, 노동권, 휴식권, 의료권, 남녀평등, 교육권 등 대부분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및 경제적 권리들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들이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을 던져주고 있으며, 특히 성분정책과 거주이전 및 이동·정보통제, 형법에 의한 인권유린 등은



심각한 국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통제적이고 억압적인 인권정책을 추진함으로써 1988년 이래 국제기구와 단체 및 주변국 등 국제사회로부터 심각한 비난을 받아 왔다. 아시아감시위원회와 미네소타변호사 국제인권위원회가 「북한의 인권」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북한정부의 조직적인 인권탄압과 자유억압 및 통제·감시 실태를 폭로하였고, 국제사면위원회(AI)는 1989년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배경설명”을 발표한 이후 매년 북한인권실태에 대해 분석·평가해 오고 있다. 또한 美헤리티지재단과 국제종교자유보호협회, 아시아·태평양 의원연맹, 국제언론인협회 및 미국무부와 러시아 정부도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보고서 및 국제회의 등을 통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 3. 人權問題에 대한 北韓의 認識과 對應方式

북한은 탈냉전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한 인권문제 제기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국가들이 북한체제를 전복시키려는 ‘평화적 이행전략’의 목적에서 정치적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체제존립과 관련된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북한은 이에 대해 중국식의 대응패턴을 따라 ‘우리식 인권’이라는 사회주의 인권개념을 내세워 반격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의 비난과 압력에 대해 과거의 강경일

변도에서 탈피하여 부분적으로 수용하거나 유화적 조치를 강구하는 등 보다 유연하고 조직적으로 대처하는 이중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특히 탈냉전시대에 들어 북한은 과거와는 달리 북한의 고립된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전세계적인 비판여론의 예봉을 피하기 위해 국제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목소리를 높여 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남한의 출소 공산주의자 송환을 집요하게 요구함으로써 인권문제의 화살을 남한으로 돌리고 인권압력을 피하는 정치적 카드로 사용하고 있다. 이같은 유화적 제스처와 이중전략은 서방으로부터 인권의 사각지대라는 지탄을 받아온 자국내 인권문제를 희석시키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조선인권연구협회를 중심으로 서방세계의 대북한 인권문제 제기에 대해 보다 유연하고 논리적이며 체계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는 부정과 거부 일변도로 치달았던 과거 북한의 행태와는 달리 탈냉전시대의 고립된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 외부세계가 이해할 수 있는 국제규범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4. 金正日 政權의 人權政策 變化 展望

북한은 대내적으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법제화를 통해 주

민들의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강력히 통제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인권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법제화는 92년 4월의 개정헌법과 92년 1월에 개정된 형사소송법 및 94년 4월 개정된 변호사법에 반영되어 있으며, 95년 6월 19일 발표한 김정일의 논문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이는 개방화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대두됨에 따라 ‘자본주의적’ 자유의 바람이 스며들어올 것에 대비하여, 서구의 정치적 다원주의와 시민적 자유의 요구를 미리 차단하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해 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적·시민적 권리에 대해서는 엄격한 통제와 처벌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아직 체제에 저항하거나 인권개선을 요구할만한 집단이나 조직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경직된 성분정책과 종교생활, 스포츠, 예술, 민속명절과 같은 문화생활에서는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김정일이 새로운 사회통합 이데올로기로 내세우고 있는 ‘광폭정치’를 정당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김정일 정권은 중국의 경우와 유사하게 서방국가들의 대북한 인권문제 제기에 대해 처음에는 무조건 부인 또는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다가 점차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유연한 대응방법을 강구해 왔으며, 최근에는 ‘우리식’ 인권개념을 주장하면서 서방세계의 인권압력 개선에 대해 정치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대외적으로 ‘우리식 인권’

의 목소리를 한층 높일 것이며 대미·대일 유화정책으로 자신들의 인권외교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 5. 北韓 人權政策의 變化를 위한 南韓의 政策方向

북한은 분단국가로서 이산가족문제가 인권정책의 현안이 되었던 동독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이산가족문제를 해결하는 기본틀이 동독이 가입해 있던 CSCE체제가 되었다는 점에서 북한은 동독과 다른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러시아와 동독은 CSCE와 UN 등 집단안전보장체제 내에서 인권문제를 정치군사적 및 경제적 협상과 병행함으로써 실질적인 결실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의 인권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CSCE와 유사한 동북아 지역안보체제의 형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이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이 현재 가입하고 있는 기존의 유엔틀을 이용하거나 북·미, 북·일 수교협상 등 양자간 채널을 활용하고 정치군사적 혹은 경제적 협상과 연계하여 북한의 인권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러시아의 경우 유대인이라는 이질적 민족집단이 인권정책에 도전하는 촉발요인이었음을 감안해 볼 때 북한 내의 북송일본인처들의 해외여행을 허가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은 북한의 인권정책을 변화시키는 매우 효과적인 전략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 내에서 사상과 성분 때문에 차별당하며 인권을 유린당하는 이산가족과 종교인, 납북자, 북송교포 및 북송일본인처 등의 사회집단에 대해 객관적이고 경험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국제인권단체들과 정보교류 및 협력체제를 강화함으로써 북한의 인권개선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국제인권규약 가입국 상호간에 인권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 가입을 유보하고 있는데다 인권이사회에 의한 심리절차 규정에 대한 가입도 유보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기구를 통한 규제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인권문제의 정치성과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충분히 이해하고, 국제사회에서 대북한 인권문제가 남북한간의 정치적 공방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논리적이며 합리적인 대북 인권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目 次

第Ⅰ章 序 論	1
1. 研究目的	1
2. 研究方法 및 論文의 構成	4
第Ⅱ章 社會主義 人權政策의 危機와 變化	6
1. 社會主義 人權問題와 人權政策의 危機	6
2. 社會主義 國家의 對西方 人權 對應方式	26
3. 小 結	40
第Ⅲ章 北韓의 人權實態와 國際社會의 對北韓 人權問題 提起 現況	44
1. 北韓 人權政策과 人權實態	44
2. 國際社會의 對北韓 人權問題 提起 現況	59
第Ⅳ章 人權問題에 대한 北韓의 認識과 對應方式	67
1. 人權問題에 대한 北韓의 認識	67
2. 對應方式	72

第Ⅴ章 金正日 政權의 人權政策 變化 展望	82
1. 對內政策 變化 展望	82
2. 對西方 人權 對應政策 展望	99
第Ⅵ章 北韓 人權政策 變化를 위한 南韓의 政策方向	106
1. 基本 方向	106
2. 유엔 및 國際人權團體를 통한 對北 人權政策 推進	109
3. 北·美, 北·日 修交와의 連繫	112
4. 南北 人權協商 推進	114
第Ⅶ章 結 論	120
參攷文獻	126

## 第 I 章 序 論

### 1. 研究目的

북핵문제 타결과 북·미관계의 개선으로 인해 김정일 정권 출범 이후 북한과 관련된 향후 국제적 관심은 인권문제로 귀착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동서진영의 군사적 대결이 종식된 탈냉전시대에 접어들어 따라 정치적 자유와 경제문제 및 주민생활 등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 문제가 커다란 이슈로 부상하였다. 더욱이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촉진된 자본주의적 '세계화'의 가속화로 말미암아 잔존 사회주의 국가들은 대내외적인 인권개선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최근 6~7년 동안 국내외에서 꾸준히 거론되어 왔다. 국제사면위원회, 미네소타변호사 국제인권위원회, 헤리티지재단, 국제종교자유보호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Defense of Religious Liberty), 미국무부 등이 북한정부의 조직적인 인권탄압과 자유억압 실태를 폭로해 왔다. 특히 1994년 7월 30일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가 송호리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던 북한 억류자 실태를 상세히 발표함으로써 북한의 인권문제는 국제적 관심사로 크게 부각되었다.



남한정부도 휴전 이후 북한에 억류된 남북인사들의 송환 요구와 이산가족 재결합 등 현실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북한의 인권유린 행태를 꾸준히 지적해 왔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시베리아 벌목장을 탈출한 노동자들과 중국으로 밀입국 탈출한 북한주민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북한의 경제생활의 열악상과 강압적 사회통제 실상 등 북한 인권정책의 전반적인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

북한은 서방세계 및 남한의 대북한 인권문제 제기 움직임을 감지하여 1992년 평양에 조선인권연구협회를 설립하고 서방세계의 대북한 인권문제 제기 내용을 반박하는 한편, 미국과 남한 등의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인권역공세를 취함으로써 대응하고 있다. 북한은 특히 남한에 대해 재소 공산주의자 석방문제 및 출소 공산주의자의 송환문제를 지속적으로 거론함으로써 북한의 인권문제를 희석시키고 대북한 인권압력을 피하는 중요한 카드로 사용하고 있다. 북한은 출소 공산주의자 송환문제를 남북 관계개선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워 남북관계 악화의 원인을 남한에 전가시키는 공세적인 대남 인권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북한의 인권실태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이 증대하고 북한의 인권역공세가 거세짐에 따라 이 문제에 대한 남한정부의 입장과 대처방안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즉 북한의 인권문제를 과연 남한이 어느 시점에서 제기해야 하는지, 또 어떤 방

식으로 어떤 사안을 제기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수립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남북한간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일 뿐만 아니라, 시기적으로도 김정일의 권력 승계, 북한의 경수로 지원 문제, 북·일수교회담,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를 포함한 남북관계의 개선 등 매우 중요한 문제들이 거론되고 있는 시점에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신중한 대응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김정일 정권이 추구하는 인권정책에 대한 분석은 남한이 남북관계를 개선 혹은 주도해 나가는데 있어서 매우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인권문제에 대한 일련의 북한의 반응과 대응으로 볼 때, 북한은 인권문제가 체제유지와 밀접히 연관된 것으로 간주하고 인권문제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크게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김정일 정권의 인권정책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북한의 인권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을 도모해 나가는 작업은 긴요하다. 이는 올바른 남북관계는 물론 통일한국의 미래상을 정립하는데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나아가 사회주의권의 체제변화와 관련해 볼 때 향후 북한의 인권문제와 인권정책은 북한체제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주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 인권문제의 실상과 국제사회의 대 북한 인권문제 제기 현황을 검토하고 김정일 정권 지도부의

인권문제에 대한 인식 및 인권정책의 변화내용과 향후정책을 분석·전망함으로써 북한 인권상황의 실질적 개선은 물론 효과적인 남북관계 추진방향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특히 북한의 인권현황 그 자체보다는 인권문제를 둘러싼 국제사회 및 남한의 대북한 정치외교적 압력과 북한의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김정일 정권의 대내외 인권정책 및 전략을 분석하고 변화방향을 전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sup>1)</sup>

## 2. 研究方法 및 論文의 構成

북한의 인권정책에 대한 연구방법으로는 먼저, 냉전시기의 구소련과 분단독일, 탈냉전 시기의 중국 등 사회주의권 사례의 일반적 유형을 살펴보고 이 유형에 근거하여 북한 인권정책을 분석하는 비교분석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자료수집 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귀순자들에 대한 면접조사를 병행·사용한다. 북한 인권제도의 변화과정과 변화의 대내외적 필요성을 분석하기 위해 북한의 각종법률에 대한 역사적 비교, 북한원전, 김정일저작 등에 나타난 인권관련 내용을 자료로 사용한다. 또한 북한 인권정책의 변화내용과 운영실태

---

1) 북한의 인권상황과 인권실태에 관한 종합적 분석은 본 연구원의 「북한의 인권실태 연구」(연구보고서 93-12)를 참조.

를 분석하는 데는 유엔인권위원회, 국제사면위원회 등과 같은 국제인권기관 및 단체의 인권관련 보고서와 귀순자들의 수기 및 면접조사 등을 사용한다.

본 보고서는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 사회주의 인권정책의 전반적인 정당성의 문제와 러시아, 동독 및 중국의 사례를 통해 발견된 대응전략 패턴을 살펴봄으로써 북한 인권정책의 문제점과 변화를 분석하는데 도움이 될 이론적 틀을 도출한다. 제3장에서는 북한의 각종 법제도와 생활실상을 중심으로 북한 인권정책 및 인권실태를 살펴보고,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문제제기 현황을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국제적 인권압력에 대한 북한정권의 인식과 대응방식을 검토하고, 위의 분석에 근거하여 제5장에서는 김정일 정권의 인권정책 변화방향을 전망한다. 제6장에서는 북한 인권정책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남한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며, 제7장은 결론으로 대북 인권정책을 추진하는데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언급한다.

## 第 II 章 社會主義 人權政策의 危機와 變化

### 1. 社會主義 人權問題와 人權政策의 危機

#### 가. 社會주의 人權개념과 人權문제

인권이란 일반적으로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 즉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일컫는다. 그러나 이 기본권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역사적, 사회적으로 다르게 이해되어 왔다. 마샬은 인류의 역사를 인간의 권리가 꾸준히 확대되어 온 과정으로 분석하며 특히 시민적 권리(civil right), 정치적 권리(political right), 사회적 권리(social right)가 단계적으로 확대되었다고 말한다.<sup>2)</sup> 시민적 권리의 확대란 모든 사람이 법 앞에서의 평등이라는 형식적인 평등이 성취된 것을 말하며, 정치적 권리의 확대는 보편적인 선거권과 정당결성 등의 권리가 주어진 것을 말한다. 사회적 권리는 노조결성, 복지시설, 실업수당, 의료혜택, 교

2) T. H. Marshall, "Citizenship and Social Class," in T. H. Marshall, *Citizenship and Social Class and Other Essay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50); David Held et al., (ed.), *States and Societies*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983), pp. 248~60.

육과 같은 일련의 사회복지 서비스의 증대를 의미한다. 이 기본권은 근대국가의 등장 이후 시민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주장되었다.

근대적 인권개념의 성장과 더불어 보편적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도 아울러 추구되었다. 19세기 들어 오토만제국 및 시리아, 발칸반도, 루마니아, 러시아 등에서 탄압받는 소수민족을 보호하기 위한 ‘인도적 개입’이 이루어졌고, 비엔나협약 이후 중부 및 동부유럽, 그리고 중동지방에서 인종적, 종교적, 언어적 소수민족을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조약 및 국제적 선언들이 체결되었다. 동시에 노예제도와 노예매매를 규제하기 위한 파리조약과 국제노예협약 등이 체결되었다. 20세기 들어 전시희생자들을 보호하는 국제인권법과 국제적십자사, 국제노동기구 등 인권향상을 위한 국제사회의 개혁적 조치가 행해졌다. 이들은 단순한 노동법이나 노동관계뿐만 아니라 강제노동, 고용 및 직업의 차별, 집단협상을 위한 결사의 자유 등을 주창하였다.

이와 같은 인권개념의 발전과정을 불란서 법학자 카렐 바삭(Karel Vasak)은 불란서혁명의 3대이념인 자유, 평등, 박애를 원용하여 ‘인권개념의 3세대’라는 개념으로 분류하였다. 즉 인권의 1세대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자유), 제2세대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평등), 제3세대는 단결권(박애)으로 각각 지칭하며 인권의 개념이 3세대에 걸쳐 변화해 왔다

고 분석하였다.<sup>3)</sup>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제1세대는 인종차별, 고문금지  
와 같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소극적인 권리를 주장  
하였다. 반면 제2세대는 20세기 초 사회주의의 급진사상에  
기초하여 인권의 보다 적극적인 의미, 즉 “무엇을 할 권리”  
를 요구하였으며, 인간의 가치향상과 균형된 발전을 위해 국  
가가 개입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들은 사회보장, 교육의 권  
리 및 사회적 형평에 대한 요구 등을 인권의 주요 내용으로  
생각하였다.

한편 제3세대 인권은 2차대전 후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부  
상하고 있는 일종의 집단적 권리를 표방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사회전체 혹은 인류전체의 노력을 필요로 하는 권리이  
다. 제3세대 인권에는 자결권, 발전권, “인류공동유산에 관한  
권리,” 평화권, 환경권, 인도적 재난구호권 등 6가지의 권리  
가 포함된다.<sup>4)</sup>

인권에 대한 이와 같은 인식의 변화는 그 내용에 있어서

---

3) Buns H. Weston, “Human Rights,” in Richard P. Claude & Burns  
H. Weston, eds., *Human Rights in the World Community: Issues  
and Action* (Philadelphia, P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89), pp. 15~20, 박홍순, “탈냉전 시대의 인권, 유엔, 한국,”  
'95 한국정치학회 5월 월례발표회(1995.5.20), pp. 2~3에서 재인  
용.

4) 박홍순, 위의 글, p. 3.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대체된 것이라기 보다는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변동에 따라 누적적·보완적이며 폭넓게 발전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서로 다른 시기에 인간들에게 필요로 했던 가치에 대한 인식이 인권의 내용으로 반영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제1세대 인권은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이 근대국가의 등장과 함께 보편적 가치로 강조했던 인권의 개념이며, 제2세대 인권은 사회주의 국가들이, 제3세대 인권은 제3세계 국가들이 각각 중요하다고 내세웠던 인권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발전과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독특한 사회주의적 인권개념이 형성되었다. 첫째, 서구의 다원주의 사회는 개인을 국가의 간섭없이 그의 권리와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존재로 보는 반면, 사회주의 사회는 개인의 이해는 곧 당이 내놓은 집단적인 이해와 일치한다고 본다. 사회주의 사회는 개인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지만 국가와 당은 노동자의 객관적, 집단적 의지를 대표하는 것이므로 결코 잘못을 저지러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사회주의 인권개념은 1848년 프랑스 혁명에서 천명된 노동계급의 권익보호와 1917년 러시아혁명으로 대두된 국가의 사회적 책임에 입각하여 개인의 자유보다는 집단적 평등을 강조한다.

둘째, 서구는 정치적 시민권에 인권의 강조점을 두는 반면, 사회주의 국가는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를 강조한다. 서



구 자본주의 사회가 주장하는 인권은 서구시민혁명에서 추구했던 개인의 정치적·시민적 권리에서 출발한다. 즉 인권 개념은 우선적으로 국가에 의해 있을 수 있는 권리침해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복지를 보호하는 것이며, 이는 간접적으로 평화증진에 기여한다고 본다. 따라서 인권의 기능에 대한 접근방식은 국가와의 관계에서 개인의 역할을 중시하는 인간 중심적(anthropocentric)인 방법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사회에서 인권보호는 세계평화증진과 1차적인 관계를 가지며, 인권 보호에 있어서 각국의 국내상황의 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인권보호는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에 중점을 둔 사회중심적(sociocentric) 방법으로 접근한다.

이러한 접근방법의 차이 때문에 서구 자본주의 국가는 인권이 보호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정당결성 및 민주적 선거 절차, 언론·집회·출판·결사·시위 등의 보장과 공정한 법적 재판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사회주의 국가들은 이러한 정치적·시민적 권리가 확보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평등분배가 실현되고 사회보장제도 등의 사회문화적 권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각각의 집단들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인권개념의 중요성과 정당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다른 인권개념을 융통성 있게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서구 자본주의 인권옹호자들은 흔히 사회주의권과 제3세계가 주장하는 인권을 인권개념에

서 제외하는 입장인데 이는 이들이 주장하는 인권들이 애매하고 이상적인 주장이지 권리가 아니며 실제로 그 권리를 실현하는데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다. 보다 근본적인 차이는 인권은 사회와 관계없는 개인적인 것이며 평등을 위한 주장은 결국 자유에 대한 제한을 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사회주의권과 제3세계 인권론자들은 서구 자본주의의 인권개념이 인간의 물질적 필요를 등한시하고 불공정한 국내, 국제적 질서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이용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들은 제1세대 권리들을 인권개념에서 제외하지는 않지만 낮은 순위로 여기며, 이들을 근본적인 경제적, 사회적 변혁에 따라 미래에 점진적으로 성취될 장기적인 목표로 여긴다. 인권에 관한 이러한 다양한 견해와 차이는 국제사회에서 인권의 구체적 실현과 관련하여 갈등을 빚고 있다.

이와 같은 인권개념의 차이로 인해 인권보호에 대한 국제협력에 대해서도 사회주의 사회는 서구사회와 의견을 달리한다. 서구사회는 인권이란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어느 국가나 사회를 막론하고 보편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공동의 노력으로 개별국가에게 인권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는 인권에 대한 개념이 각 국가와 사회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어느 한

국가나 사회의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부당하며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는 내정간섭 행위로 간주한다.

따라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자결권을 가장 기본적인 인권으로 간주하며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각 국가의 자결권이 침해되지 않고 세계평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회주의는 인권의 존중을 순수한 국내문제로 간주하기 때문에 국가나 국제기구가 타국가의 인권상황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라 하더라도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중대한 위반이 국내적 기능의 한계를 넘어서 국제범죄에 이르렀을 때에는 국제기구의 개입을 인정한다.

#### 나. 사회주의 인권정책의 위기:

#####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 증대

##### (1) 인권문제의 국제적 공론화

인권문제가 국제사회에서 본격적인 관심을 끌게 된 것은 2차대전기간 동안 특히 나찌정권의 잔악한 행위에 대해 전 세계적인 여론이 확산되고부터이다. 주권국가를 기본단위로 형성된 근대국제질서가 지배적이던 2차대전까지만 해도 주권국가의 대내적 최고 통치권과 대외적 독립을 지고의 가치로 인정하였고,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개별국가

에 대한 주권이 외부의 간섭이나 침략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2차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독일, 이탈리아, 일본의 세 군국주의 국가들은 억압적이고 인종차별적 대내외 정책을 통해 타민족과 주변국가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었다. 그 결과 내정불간섭과 국내정책의 연장으로서 전쟁의 권리를 인정한 근대국제질서의 위험성이 제기되었고, 인권보호에 대한 국제적 노력의 필요성에 대한 합의가 증대하면서 UN을 중심으로한 국제적 수준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장치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다.<sup>5)</sup> 다시 말하면 대외적 인권침해 행위보다는 독재정부의 인권유린으로 받을 수 있는 위험이 더 심각하다는 인식을 갖게 된 것이다.

2차세계대전 이후 집단안전보장유지를 위해 결성된 UN은 유엔헌장에서 인권존중을 위한 국제협력을 유엔 설립목적의 하나로 규정하고 1948년 12월 10일 제3차 유엔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을 채택하였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있어 어느 누구의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고 행복을 추구할 자유와 권

---

5) 김학준,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 「북한의 인권: 실상과 국제사회의 역할」 (한양대 사회과학대학 학술심포지움 논문 및 토론집, 1994.11.9), pp. 3~5.

리가 있음을 명시하였다.<sup>6)</sup>

그러나 세계인권선언은 인권보장을 위한 목표와 열망을 제시하는 일반원칙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선언문으로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제21차 유엔총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강하여 구속력있는 법규로 정하는데 필요한 국가의무체계의 기반을 제공할 목적으로 1966년 12월 16일 「국제인권규약」을 채택하였다. 「국제인권규약」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확인한 기초 위에서 ‘시민적·정치적 제권리’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제권리’ 등 인권보호에 필수불가결한 조건과 절차를 규정하였다. 이같은 노력은 결실을 맺어 1976년 1월 3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제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과 같은 해 3월 23일 「시민적·정치적 제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및 B규약선택의정서가 발효되었다.

탈냉전 이후의 세계질서는 점차 국제기구의 역할과 세계적 공통문제들에 대한 관심의 증대가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sup>7)</sup> 냉전종식 이후

6) 인권선언은 전문과 30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선언의 철학(제1조), 형평과 무차별의 원칙(제2조), 생명·자유·안전 및 시민적·정치적 제권리(제3~21조),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제권리(22~27조), 권리이행의무(제28~30조)를 규정하고 있다.

7) Marc Trachtenberg, "Intervention in Historical Perspective," in Laura Reed and Carl Kaysen, eds., *Emerging Norms of Justified Intervention* (Cambridge: American Academy of Arts and Science,

많은 국가들이 인권의 보호증진을 통한 국제질서 및 평화유지라는 가치를 내걸고 공동보조를 취하며 인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따라서 인권문제는 점차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사회주의권이 붕괴되고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20세기 말 국제사회의 변화는 가히 ‘인권혁명’으로 부를 수 있을 만큼 인권문제는 인류의 공통관심사가 되고 있다.

1993년 6월 테헤란회의(1968.4) 이후 25년 만에 개최된 제 2차 세계인권회의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171개국의 정부 대표단 2천여 명 및 900여 개의 비정부기구 대표들이 참가하여 2주 동안 개최되었다. 여기에서 채택된 「비엔나 인권선언」과 「행동강령」은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정책과 체제의 위기를 겪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변화를 가속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특히 비엔나 인권회의에서는 인종·종교적 분규 및 독재정권에 의한 인권침해가 계속되는 탈냉전시대의 새로운 인권보호원칙과 행동계획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인권의 보편성 문제, 경제발전·민주주의와 인권보장간의 상관관계, 시민권에 대한 정부의 의무와 역할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또한 인권문제의 보편성에 입각하여 내정불간섭이라는 미명하에 정권유지를 위

---

1993), 김학준, 위의 책, p. 6에서 재인용.

하거나 발전을 이유로 자행되는 인권유린을 방관할 수 없으며 개발은 개인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민주제도하에 국민적 참여 및 인권의 제도화와 병행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되었다.<sup>8)</sup>

탈냉전 이후 러시아를 비롯한 대부분의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은 더 이상 '사회주의적' 인권개념을 고집하지 않고 있다. 러시아와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은 인권문제에 대해 과거의 태도에서 탈피하여 정치적·시민적 인권의 보편성을 주장하는 서구 자본주의 세계와 기본적으로 동일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반면 제3세계 개발도상국들은 기존에 사회주의권이 고수했던 각 국가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주장하면서 인권의 보편성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사회주의 국가는 탈냉전 이후 인권정책의 정당성을 급속도로 상실해 가고 있다. 구조적으로 보면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붕괴로 말미암아 집단평등의

---

8) 이에 대해 개도국들은 1986년 유엔총회가 채택한 '개발권에 관한 선언'에 근거하여 경제적 발전없이 인권보장이 어려우며 인권문제도 주권사항이므로 자결권에 속하므로 외세의 간섭이 용인되지 않으며, 또 선진국들이 자국과 외국에 대해 이중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선언은 또한 소수민족의 권리, 여성의 동등권, 어린이 권리협약의 비준 조치 등을 요구하고 국제법위원회가 국제범죄재판소 설치 업무를 계속 추진할 것을 건의하였다.

이데올로기를 내세워 개인의 자유를 억압했던 사회주의 인권정책은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

## (2) 국제인권규약 제정·심의

1976년 1월 3일 효력을 발생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A규약)은 인권선언에 명시된 거의 모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과는 달리 즉각적인 시행을 목표로 하지 않으며 지속적인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B규약)은 인권선언에 표명된 권리들을 거의 포함하고 있으나 재산소유권과 망명권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sup>9)</sup> 반면 자결권과 인종적, 종교적,

9) 모두 전문 및 제6부 5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제1조)는 집단적 권리라고 하는 민족자결권을 정하고 있으며, 제2부(제2~5조)는 권리존중의 원칙 및 평등권과 권리제한의 원칙을 정하고 있고, 제3부는 제6조의 생명권보호 조항으로부터 제27조의 민족언어사용권에 이르기까지 실제적 권리를 정하고 있다. 제4부는 제28조부터 45조까지 B규약 및 B규약선택의정서의 실시기구인 인권이사회의 설치와 운영 및 권한에 관해 규정하고 있고, 제5부와 제6부는 유엔헌장 등과의 관계 및 규약의 비준절차 등 관련된 조항들로 이루어져 있다.



언어적 소수민족의 권리 등과 같은 인권선언에 포함되지 않은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B규약선택의정서)는 B규약상의 권리를 침해당했을 경우 피해당사자가 인권이사회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한 제1선택의정서와 사형제도 폐지를 규정한 제2선택의정서로 되어 있다. 진정서가 일정요건을 구비한 경우, 이사회는 당사국 정부가 제출한 답변자료를 검토하고 진정서를 심의하여 이사회의 견해를 채택하며 당사국 정부 및 진정인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엔은 국제인권규약을 하나로 통일하고자 하였으나 서방 국가들과 사회주의 국가들간의 입장대립으로 규약을 분리시켰다. 즉 B규약에 정한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중시하는 서방국가의 입장과 A규약에 정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중시하는 동구권 국가들의 입장이 대립하였다. 게다가 A규약에 정한 권리를 현실적으로 보장할 만한 사회·경제적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제3세계 국가들의 입장을 고려하고, 나아가 권리의 성질상 A규약에 정한 권리는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요구하는데 비하여 B규약에 정한 권리는 국가의 불간섭으로 즉시 보장될 수 있다는 차이를 고려하여 서로 다른 규약으로 제정하였다. 또한 B규약에 정한 권리를 실

현하기 위한 조치에 관하여 선택의정서를 별개의 조약으로 만들어 각국이 그 비준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현재 인권보호에 관해 60개 이상의 국제협약과 선언문이 존재하며 이중 중요한 것으로는 인종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고문방지협약, 아동권리협약과 집단학살방지 및 이주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 사형폐지규약 등이 있다. 특히 주요협약의 당사국들은 조약이행을 관리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고 당사국들은 협약이행 상황을 보고서로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1995년 8월 현재 A규약에 129개국, B규약에 126개국, 그리고 B규약 제1선택의정서에는 78개국, 제2선택의정서에는 22개국, 각각 비준 또는 가입하고 있다.<sup>10)</sup> A규약과 B규약 비준당사국들은 이러한 권리들의 준수정도에 관하여 경제사회이사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으며, 이 보고서는 A규약과 B규약에 근거하여 설립된 각각의 독립된 이사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다. B규약에 대해서는 1976년에 발효된 B규약 28조에 의거하여 4년 임기의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mmittee)가 심의를 담당하며, A규약에 대해서도 임기 4년의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Committee on Economic, Social

10) B규약 제2선택의정서인 「사형폐지에 관한 선택의정서」는 1989.12.15 채택되어 91.7.11 발효되었다.

and Cultural Rights)가 심의를 담당하고 있다.<sup>11)</sup>

북한은 1981년 9월 14일 국제인권규약의 A규약인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제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B규약인 「시민적·정치적 제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비준·가입하였다. 여기에서 북한은 가입국 상호간에 서로 인권문제를 제기할 수 있게 되어 있는 B규약 제41조를 유보하였으며 B규약 선택의정서 가입도 유보하였다.<sup>12)</sup> 북한은 또한 「전쟁 희생자 보호를 위한 1949년의 4개의 제네바조약」에 가입해 있고, 「전쟁범죄 및 비인도적 범죄에 관한 시효 불적용에 관한 조약」에 비준하였다.

북한은 1981년 규약 가입 이후 83년 1월 UN 인권위원회에 최초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의를 마쳤다.<sup>13)</sup> 북한은 이 보고

11) A규약은 최초보고서를 규약발효 다음해 6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그후 매5년마다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B규약의 최초보고서는 규약발효후 1년 이내 제출해야 하며 그후 매5년마다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12) 조용환, “국제적 인권보호제도와 이용가능성,” p. 114. 남한은 A, B규약과 B규약 제1선택의정서 모두 1990년 4월 10일 가입서를 제출하여 동년 7월 10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되고 있으며, B규약 제2선택의정서에는 가입하지 않고 있다.

13) 국제사면위원회, 「북한: 국제사면위원회의 우려」 (1993.10), p. 26;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배경설명” (AI, 1989); 평화문제연구원, 「북한의 인권백서」 (서울: 평화문제연구소, 1991), p. 94. A규약에 대한 심의는 1991년 12월에 있었으며 B규약에 대한 심의도 마쳤다. 남한은 B규약에 관해 90년 7월 최초보고서를

서에서 북한주민들은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적 선거권 및 언론·출판·집회·결사·시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최초보고서 제출 이후 5년마다 인권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두번째 보고서를 87년까지 내도록 되어 있으나 인권위원회가 10회 이상 독촉장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sup>14)</sup>

### (3) 국제인권기구의 확대·강화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약이 성실히 이행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요구하는 국제적 인권기구는 크게 정부간기구(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와 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로 나눌 수 있다. 정부간기구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UN이다. UN은 총회와 경제사회이사회 및 그 산하의 인권위원회, 국제노동기구(ILO)와 유네스코(UNESCO)<sup>15)</sup>

---

제출하여 92년 7월 동보고서의 심의가 있었고 그 결과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를 받은 바 있다. A규약에 대해서는 93년 10월 최초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95년 5월 위원회의 심의 결과 교원·공무원 노조결성을 인정하도록 권고를 받았다.

- 14) 국제사면위원회, 「북한: 국제사면위원회의 우려」 (국제사면위원회 사무국, 1993.10), p. 28.
- 15) 그러나 ILO를 활용하는 방안은 북한이 아직 ILO에 가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없으며, UNESCO를 이용하는 방안도 북한이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한 이후에는 현실성이 없다.

를 비롯한 각종 전문기관을 통하여 전세계의 차원에서 인권 문제를 다루는 다양한 조직을 갖추고 있다. 이외에도 각 지역별로 아프리카연합기구, 미주기구, 유럽공동체 등의 기구와 사법적 및 준사법적 인권기구들이 있는데 이들은 가장 효율적인 인권보장체제로 평가되고 있다.

유엔의 경제사회이사회 산하에 있는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는 총회에서 선출된 3년 임기의 53개국의 정부대표로 구성된다.<sup>16)</sup> 인권위원회 산하에는 ‘인종차별 철폐 소위원회’(Sub-Commission on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and Protection of Minorities)가 있으며, 또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실무위원회(Working Group),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sup>17)</sup> 및 특별대표(Special Representative)를 설치 혹은 임명하고 있다. 실무위원회는 인권의 ‘중대한 위반’에 대한 조치를 고려하며, 특별보고관은 제출된 자료를 분석하고 관계인사들을 면담하거나 관련국가들의 협력하에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보고서를 작성·제출한다. 인권위원회는 ‘중대하고 계속적인 인권침해의 형태’를 보인다고 판단되면 각

16) 남한은 93~95년간 인권위원국으로 활동하였으며 96~98년 임기에 재선되었다.

17) 국가별 인권문제 특별보고관 20명, 주제별 인권문제 특별보고관 11명이 임명되어 있으며 남한사람으로는 백충현 서울법대 학장이 95년 4월 아프가니스탄 인권문제 특별보고관으로 임명되었다.

나라별 혹은 이슈별로 집중적인 토의를 벌인다.

뿐만 아니라 인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특별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첫째, 인권위원회의 일반 진정서 처리 절차이다. 인권침해가 일어났다는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집단 또는 단체가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인권위원회 산하 관련 실무위원회 또는 특별보고관은 동진정서를 당사국 정부에 전달하여 답변을 하도록 한다. 동실무위원회 또는 특별보고관은 관련정부의 답변서를 접수한 후 동진정사항을 심사하여 인권침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면 이러한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위원회에 회부하게 된다.

둘째, 경제사회이사회가 1970년 결의문 1503호를 통해 결정한 인권보호절차인 이른바 '1503절차'이다. 1503절차란 인권위원회는 “지속적인 중대하고 신빙성있는 인권위반을 노출시키는 것으로 보이는” 통신(진정)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이 절차는 개인과 그 대표자, 비정부간기구 및 관련단체에게 진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인권위원회는 객관성있는 전문가나 특별보고관을 활용하여 인권문제를 조사할 수 있다. 인권위원회는 비공개 토론을 통해 인권침해국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심의하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절차”로 통한다. 공개토론을 통해 의제상정 및 결의문을 채택함으로써 인권에 관한 일반적 인식을 제고하고 국제사회의 여론 혹은 도덕적 압력을 가한

다.

셋째, 세계인권선언의 기본이념과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으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고문방지협약 등 인권협약이 제정되었으며, 이러한 협약의 당사국 정부는 동 협약규정에 따른 진정서에 대한 답변의무가 있다. 동진정서 처리절차는 기본적으로 인권위원회의 진정서 처리절차와 유사하다.

유엔은 인권고등판무관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인권보호의 전기를 마련하였다. 제49차 총회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준수·보호를 위한 인권기구의 강화 필요성을 강조한 「비엔나 인권선언」과 유엔 제48차 총회의 건의를 바탕으로 인권고등판무관을 신설하고 94년 2월 14일 호세 라쏘(Jose Ayala Lasso) 대사를 초대 인권고등판무관으로 임명하였다. 인권고등판무관은 인권조직을 강화하고 인권사무국을 전체적으로 감독하며 각국 정부의 임무수행과 국제협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한편 정부차원의 국제인권기구 이외에 각국의 인권상황을 감시하고 인권침해를 고발함으로써 인권보호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는 그룹이 비정부간 인권단체(NGO)들이다. 이 NGO 인권단체들은 인권유린의 원인을 면밀히 조사하고 자체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인권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약 15,000개의 NGO가 존재하

며 이중 약 5,000여 단체가 회원제도를 갖고 있고 780여 단체는 협의자격을 갖고 있다.<sup>18)</sup>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국제사면위원회, 국제적십자사, 인권감시(Human Rights Watch), 국제인권옹호연맹, 국제인권협회 등은 국가별, 지역별 지부를 체계적으로 갖추고 있는 대표적 민간인권단체들이다.

사실 유엔인권위원회나 국제기구에서 일국의 정부대표가 타국의 인권문제를 비난하기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이다. 따라서 일부 서방국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노력은 매우 제한적이며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들 NGO는 정부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제약없이 각국의 인권침해 고발에 매우 적극적이다. NGO는 인권침해상황을 조사·폭로하고 세계각국의 여론에 호소하거나 각국 정부에 대해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조약을 발의·채택·비준하도록 하는 등 실질적으로 인권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NGO의 자유로운 활동이야말로 인권관련 회의에서 토의의 기초가 되며 인권개선과 보호에 절대적인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

18) 최성철, “국제기구를 통한 남북억류자 송환방안 모색,” 통일원, 「사회문화분야 '94년도 전문가 위촉과제 종합」(서울: 통일원, 1994), pp. 167~73.



## 2. 社會主義 國家의 對西方 人權 對應方式

### 가. 구사회주의권: 소련과 동독

#### (1) 소련

소련에서 인권문제를 포함한 체제저항 운동이 처음 시작된 것은 스탈린의 사망 이후 소련사회가 재편과 변화를 지향했던 때였다. 소련사회의 종교의 자유와 도덕성의 회복을 부르짖은 솔제니친의 보수적 저항세력으로부터, 서구의 자유주의적 전통에 고무되어 독재정권에 반대한 사하로프의 자유주의적 저항세력, 그리고 레닌주의 체제 내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메드베데프의 맑스주의 개혁세력 등 다양한 체제저항 운동이 태동하였다. 체제저항 운동은 1966년 경에 이르러 급속히 확산되어 소련의 인권유린 실태가 이들에 의해 서방세계에 폭로되었다.

그중 가장 큰 파장을 몰고 왔던 사례는 소련 내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의 해외이주 허용 문제였다. 칼 맑스(Karl Marx)가 “유대인문제에 관하여”<sup>19)</sup>에서 인식하였듯이 맑스가 상업

---

19) Karl Marx, “On the Jewish Question,” in Robert C. Tucker (ed.), *The Marx-Engels Reader*, 2nd ed. (New York: W.W. Norton & Company, 1978), pp. 26~52.

주의적 혹은 자본주의적 특성으로 비판하였던 유대인 특유의 신앙적 특성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회주의에 동화되기 어려운 이질적 집단이다. 러시아에서도 유대인들의 역할은 중요하게 지적되어 초기부터 유대인 포용정책을 실시함으로써 동화시키려 하였다. 이에 힘입어 유대인들은 1917년 혁명 이후 20여 년간 소련사회에 동화되어 비교적 높은 사회적, 교육적 상향이동을 하였다. 그러나 1930년대에 소련사회에 동화를 싫어하는 유대인들을 위해 허용한 비로비잔(Birobidzhan)이라는 유대인 자치공화국이 유대인들의 호응을 얻지 못했으며 독일의 침공에 협조한 러시아 민족주의자들은 마침내 1941~45년 사이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기에 이르렀다.<sup>20)</sup> 유대인들에 대한 사회적 혜택도 차단되었고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1949년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포하자 이에 자극받아 유대인의식은 되살아났다.

소련이 1967년 이스라엘과 아랍간의 6일전쟁시 외교적으로 아랍을 지원하자 소련정부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감은 증폭되었다. 이같은 감정은 1970년대 중동전쟁을 거치면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정신적 고향으로 생각하는 시오니즘을 부흥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유대인들의 가족상봉을 위한 국외여행 허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당시 소련에 거

---

20) R. J. Vincent, ed., *Foreign Policy and Human Right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pp. 67~68.

주하던 유대인의 공식통계로 181만이었으나, 유대계의 추계로는 약 300만 내지 350만이나 되었다.

1975년 헬싱키 최종결의안이 타결됨으로써 관련국들간에 이산가족 접촉과 정기적인 방문 및 인적교류의 확대가 보장되자 유대인의 해외이주 허용 문제가 국제정치문제로 다루어지게 되었다. 미국과 서방의 인권압력 움직임에 대해 소련은 정치체제와 가치관이 다른 사회주의를 말살하기 위한 자본주의권의 이데올로기적 와해공작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사회주의적 인권의 의미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주장하는 개인의 정치적 자유라는 협소한 범위를 넘어서 경제·사회·문화의 영역으로 확대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공산주의권의 연대를 키워나갔다.

소련은 이념적으로 자본주의의 체제공격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대하고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인권문제를 포함한 현실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유연한 대응태도를 보여주었다. 1971년 3월 제24차 당대회에서 소련은 유대인들의 해외이주정책을 완화시켰으며 브레즈네프는 평화프로그램을 출범시켰다. 소련은 동서간 화해를 목표로 결성된 유럽안보협력회의(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CSCE)의 주요 멤버가 됨으로써 유대인들의 해외이주를 허용하도록 요구한 이스라엘과 미국, 유엔에 적극 협조하였다. 당시 소련 헌법은 해외이주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법으로는 유

태인들을 해외로 내보낼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련은 소련이 가입한 시민권·정치권을 위한 국제협약을 적용하여 해외이주를 허용하였고, 1975년 8월 이후에는 헬싱키협정에 가입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이주를 허용하였다.

소련계 유대인의 해외이주는 미·소 군사적 테탕트무드와 긴밀히 연결되어 추진되었다. 미·소의 냉전적 대결 상황에서 카터(1977~80) 미대통령은 ‘인권외교’라는 이름으로 군비축소협상과 소련의 인권문제를 연계시키면서 소련내 거주하는 유대인들의 국외이주 허용을 강력히 촉구하였다.<sup>21)</sup> 이에 대해 소련은 동서의 군사적 화해조치의 의지를 증명하기 위해 유대인들의 해외이주를 허용하였기 때문에 SALT I 과 SALT II 협상이 이루어진 1972~74년과 1978~80년 사이에 유대인들의 해외이주가 피크를 이루었다.<sup>22)</sup>

한편 미국은 유대인들의 해외이주 허용과 관련하여 대소 경제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무역법안(Trade Bill)을 마련하였다. 즉 미국은 사회주의 국가가 자국의 시민에 대해 해외이주권을 허용하지 않으면 최혜국조치(most favored treatment)를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무역법안을 통과시키고 유대인들의 해외이주를 허용하도록 요구하였다.<sup>23)</sup> 그러나 소련은

21) 위의 책, pp. 70~74.

22) 위의 책, p. 74 및 같은 글 각주 37를 참조.

23) 위의 책, pp. 72~74.

1975년 이같은 무역협정에 대한 무효화를 선언하였고 그 결과 유대인의 해외이주는 일시적으로 주춤하였다.

유대인들의 해외이주의 방법은 소련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고 소련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견지에서 철저히 개인수준에서 이루어졌고 공식적으로는 가족재결합이라는 명분을 이용했다. 출국을 원하는 유대인들은 해외거주 친척으로부터 초청장을 발부받아 출국비자를 신청하여 출국하였다. 출국후 해외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면 소련은 이들의 시민권을 박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해외이주가 허용되도록 하는 절차를 관례화하였다.

## (2) 동 독

동독의 인권문제는 분단국으로서 서독이라는 상대가 있었다는 점에서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서독은 1960년 5월 파리정상회담을 통해 베를린 자유통행을 결정하였고 동독은 이에 반발하여 동베를린을 봉쇄하고 장벽을 구축함으로써 동서독간에 이산가족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나 동독은 여타 사회주의 국가와는 달리 1961년 베를린장벽 설치 이후에도 분단국이라는 특수성을 적용하여 베를린에서의 한시적 방문을 허용하고 이산가족들의 절박한 문제, 예컨대 출산, 결혼, 위독상황, 질병, 사망 등에 대해 특별방

문을 허용하는 등 비교적 자유로운 인권정책을 추진하였다. 1972년 12월 동서독간의 기본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산가족 문제 등 인권문제에 대한 구속력있는 공식문서를 만들었다. 그러나 동독의 인권문제가 국제적으로 부상하는 데는 CSCE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 1975년 8월 CSCE의 헬싱키협정(Helsinki Accord)으로 동독의 인권문제는 보다 집중적으로 다루어졌기 때문이다.<sup>24)</sup> 헬싱키협정은 동독을 국제적 감시의 틀안으로 끌어올 수 있었던 중요한 기제였다. 헬싱키협정 제 3부 인도적 협력에서 이산가족문제를 명문화함으로써 이산가족의 재결합 및 상봉을 국제적으로 보장하도록 명시하였다. 1982년 2월 절박한 문제에 대한 여행자 왕래규정과 83년 9월 이산가족 상봉 및 동독국민과 외국인간의 결혼문제 처리가 제기되자 동독정부는 헬싱키협정 제3부의 기본정신을 준수한다는 취지로 이산가족문제에 대한 법규제정을 공표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은 80년대 들어 서독의 보다 적극적인 대동독 인권정책의 추진으로 서서히 유연성을 갖게 되었으며, 1985년 소련에서 개혁과 개방을 주창한 고르바초프가 등장하면서 동서독간 인권정책이 활기를 띠게 되었다. 헬싱키협정의

24) 김성윤, “독일연방(서독)의 대독일민주공화국(동독) 인권정책 사례,” 통일원, 「사회문화분야 '94년도 전문가 위촉과제 종합」, pp. 17~19.

제3부 인도적 협력은 마드리드 후속회의(1980~83)와 비엔나 재검토회의(1986~89)에서 더욱 구체화됨으로써 동독의 정책변화를 유도하는데 성공하였다.

서독과 CSCE의 인권압력을 받은 동독은 UN과 CSCE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하는 한편 서독과는 ‘비밀거래’를 통해 인권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중정책을 취하였다.<sup>25)</sup> 동독은 동서독간의 합의를 존중하여 서독의 인권개선노력에 협력하였으나 내독간의 합의만으로 서독이 동독주민들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도록 동독정부를 설득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동독 정부는 서독이 제기하는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국내정치 간섭이라는 이유를 들어 강력히 반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독은 국내 인권문제가 국제적인 감시를 받고 논의되는 상황에서는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이는 동독이 인정하는 국제기구나 국제법을 통해 동독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방법이 동독의 인권개선에 매우 효과적이었음을 말해준다.

UN과 CSCE가 측면에서 지원하며 국제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동안 서독은 동독에 인권개선을 위한 비밀협상을 제의하고 동독정부와 접촉하였다. 서독정부는 내독관계성 차관을 실무책임자로 하여 동독의 정치범 석방과 이산가족 재상봉을 중심으로 동독주민들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동독측과

25) 위의 책, pp. 19~21.

의 비밀협상을 꾸준히 추진했던 것이다.

특히 정치범 석방을 위한 비밀거래와 이산가족상봉의 두 가지 사안은 인권개선의 중요한 두 축이 되었다. 서독연방예산을 투입하여 통일이전까지 동독감옥에 수감중인 총 3만3천7백55명의 정치범을 석방시켰고, 단순한 상봉이나 한시적인 재회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25만 명의 이산가족이 재결합할 수 있었다. 이산가족의 재회와 같은 동독의 인권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동독이 관계정상화를 기회로 서독으로부터 국제법적 승인을 받으려고 했고, 서독은 이를 인도적 문제와 연결시켜 동서독간의 이해가 상호연계되었기 때문이다.<sup>26)</sup>

#### 나. 현사회주의권: 중 국

1980년대 중반까지는 인권문제가 중국의 대외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았다. 1986년, 87년의 학생데모가 시작되면서 미국과 서방국가들은 중국의 인권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특히 중국내 가족계획과 티베트문제 및 학생·지식인 탄압 등이 중국의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안으로 부상하였다.<sup>27)</sup>

26) 심익섭,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 위의 책, p. 105.



1993년 11월 전직 노동자출신인 楊週·秦永敏 등 9명이 북경에서 「平化憲章」 그룹을 결성하고 공산당이 사회주의 시장경제 및 정치개혁 등 평화적 체제변혁을 선도할 수 있는 유일한 역량을 강조하면서 다당제 도입, 언론·집회·결사의 자유 인정, 반혁명죄 폐지, 천안문사태(89.6)와 관련된 잔여 수감자의 석방 등을 요구하였다. 이를 계기로 대학생, 노동자, 농민, 지식인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국내의 자생적인 권단체들이 결성되었다.<sup>28)</sup>

냉전체제가 종식된 이후 중국은 과거 냉전시기 미국 등 서방세계로부터 누렸던 대소련 견제의 전략적·군사적 레버리

27) Harry Harding, *A Fragile Relationship: The United States and China since 1972*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1992), pp. 202~06.

28) 93년 11월 전 북경 항공우주대생 鄭旭光 등이 주축이 된 「인권보호연합운동」은 陝西省 西安市에서 발기인 모임을 갖고 전국민에게 비폭력 인권보호 투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였다. 94년 3월에는 노동운동가 劉念春 등 120여 명이 「노동자 권리보장연맹」을 창설하고 全人大와 민정부에 자유노조의 합법화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발송하였다. 또 94년 4월 상해시 민주운동가인 李國濤·王輔臣 등은 지식인·노동자·농민 등 54명과 연명으로 「인권협회」를 창설하고 노동자·농민들의 권익보장을 위한 조합결성 허용 등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전인대에 발송하였다. 94년 6월에는 전 상해의과대 강사 鮑戈 등 167명이 자유노조 설립허용, 종교의 자유인정 등을 실천목표로 한 「인권의 목소리」 설립 신청서를 상해시 정부에 제출하는 등 국내 인권운동 조직체들도 생겨났다.

지를 상실하였고 이에 따라 미국은 중국의 민주화와 인권개선을 촉구할 수 있게 되었다.<sup>29)</sup> 특히 1994년 5월 26일 연계 정책을 철회하기는 했지만 천안문사태 이후 인권문제를 對 중국 최혜국(MFN) 대우 연장문제와 연계하여 중국을 인권문제국으로 지목하여 비판의 강도를 높여 왔다.

미국 등 서방국가와 국제인권단체는 중국에 대해 국제 인권규약 준수, 정치범 석방, 티베트의 종교·문화 보호, 해외 방송 청취 허용, 수감자 인권보장 등 인권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독일 쾰른 외상은 94년 3월 중국의 반체제인사의 연행·조사·구금과 관련하여 이는 독·중간의 건설적인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이들의 석방을 촉구하였다. 같은 시기 네델란드는 퀴즈만스 외무장관의 방중시 정치범 40여 명의 명단을 제시하면서 관련정보의 제출을 요청했다. 일본은 종래 중국 인권문제의 직접적 거론을 회피해 왔으나 호소가와(細川護熙) 수상의 중국방문을 계기로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권의식 차원에서 인권개선 노력을 촉구하였다.

세계인권회의 및 UN인권위원회, 국제사면위원회<sup>30)</sup> 등은 매

29) 길정우·신상진·이유진·여인곤, 「미국 클린턴 행정부의 동북아정책과 동북아질서 변화: 1990년대 동북아질서 예측(Ⅲ)」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pp. 148~53.

30) 국제사면위원회는 94년 2월 티베트에서 11명의 여성이 반중국 시위에 참가한 혐의로 수감된 사실을 폭로하였으며, 94년 6월에는 「천안문사태 이후 5년간의 인권침해」라는 보고서를 통해

년 중국을 인권문제국으로 지목·비판하면서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무부는 94년 2월 1일 연례보고서를 통해 “중국내 불법구금, 고문, 즉결처분 등 인권유린행위의 지속으로 중요한 인권개선이 없었다”고 평가하는가 하면, 「아시아워치」(Asia Watch)는 94년 2월 20일 “중국은 세계 최후의 공산국가로서 정치·종교문제로 최소한 1,200명을 박해하는 등 인권탄압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sup>31)</sup>

중국은 중국내 인권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정책이 대중 「和平演變」 전략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sup>32)</sup> 중국은 냉전시기 미국이 반공을 타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구실로 이용해 왔으나, 냉전체제 붕괴 이후에는 인권이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약소국의 내정에 간섭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더구나 중국은 미국의 대중국 인권압력이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지향하는 현 개혁노선과 등소평 사후 중

---

천안문사태관련 사망자(75명)와 수감자(200명)의 추가명단을 공개(94.6.1)하였다.

31) 「인권감시 아시아」(Human Right Watch Asia)는 94년 5월 19일, 천안문사태와 관련된 정치범 500여 명이 대미수출용 장갑생산 공장의 품질검사 작업에 동원되고 있다고 폭로하였다. 「인권감시 아시아」는 또 사형수의 신장, 각막 등 각종 장기가 매년 2,000~3,000개씩 불법 적출되고 있다고 비난(94.8.29)하였다.

32) 길정우·신상진·이유진·여인곤, 「미국 클린턴 행정부의 동북아정책과 동북아질서 변화」, p. 149.

국의 사회통합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미국이 인권보호를 대외정책의 중요한 가치로 추구하는 것은 중국내 경제·정치적 자유화 세력에게 미국의 가치관을 주입시켜 미국식 민주주의를 수용하도록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중국은 내정불간섭, 상호주권존중 및 평등호혜원칙이 신국제질서 형성의 기본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국의 인권문제는 근본적으로 중국 내부문제이므로 미국 등 타국이 간섭할 성질의 문제가 아님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江澤民은 세계각국들의 사회제도, 경제발전 정도, 역사전통 및 문화적 배경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인권에 대한 개념이 동일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타국에게 미국이 신봉하는 정치모델이나 경제모델을 수용하도록 강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역설한 바 있다.<sup>33)</sup> 또한 李鵬 총리도 94년 4월 6일 “인권이 국가의 주권보다 상위개념일 수 없으며 생존권·발전권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서방의 인권탄압 논리를 주권침해이며 내정간섭 행위라고 정면으로

33) 「人民日報」, 1993.3.9, 길정우·신상진·이유진·여인근, 위의 책, p. 150에서 재인용: 강택민 주석은 94년 3월 13일에도 “서방측은 중국 인민의 권익과 복지는 무시한 채 중국의 안정을 파괴하는 소수 인물의 인권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짐으로써 내정간섭을 행하고 있다”고 반박하였다.

반박하였다.<sup>34)</sup>

중국내 인권문제에 대한 미국의 간섭에 대해 강경입장을 보이면서도 중국은 실제로는 미국의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면서 대응해 나가고 있다. 중국정부는 대내적인 인권단체 결성 움직임에 대해서 주모자에 대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히 대처하는 한편 「치안관리 처벌조례」 개정(94년 5월), 「국가안전법 시행세칙」 제정(94년 6월) 등을 통해 이 단체들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조항을 마련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94년 7월초 「노동자 권리보장연맹」의 핵심간부 3명을 체포하기도 하였다.

중국은 1991년 11월 「인권백서」를 발간하고 92년 8월 「교

---

34) UN인권위원회의 중국인권문제 토의 결과 서방측이 제출한 중국인권문제 결의안의 처리와 관련, 제50차 인권위원회(94년)까지는 중국측의 '불처리동의'(No Action Motion)가 통과됨으로써, 동결의안의 채택은 번번히 실패하였다. 그러나 제51차 인권위원회(95.1.30~3.10, 제네바)에서는 중국측의 '불처리동의'가 가부동수로 부결됨에 따라 서방측 결의안이 처음으로 표결에 부쳐졌다. 표결결과 동결의안이 부결되기는 하였으나, 중국측으로서는 동결의안의 표결회의 자체를 중국인권문제에 대한 중요한 압력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동시에 중국은 1992년 로스엔젤레스 폭동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미국에서도 완전한 인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맞대응하고 있으며 중국의 실제 인권상황이 미국에 비해 결코 열악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人民日報」, 1992.5.10; 위의 책, p. 151에서 재인용.

도행정백서」를 발표하여 형식적으로나마 인권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서방에 공표하였으며, 93년 2월 17일에는 王丹과 郭海峯 등을 석방함으로써 천안문사건 관련 정치범이 전원 풀려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정치망명자 가족의 출국을 허용키로 하고 235명의 정치범에 대한 관련서류를 제공하는 등 유화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아울러 錢其琛 중국외교부장은 94년 10월 방미시 4월 이래 중단된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와의 중국교도소 방문 관련 협상재개에 동의하였고<sup>35)</sup>, 미변호사들을 초청하여 법률개혁을 통한 인권개선문제를 토의하는데 합의하였다.

이와 동시에 93년 3월 관변단체인 「중국 인권연구회」(회장: 朱穆之 전 문화부장)를 설립하는 한편, 94년 1월 관영 「인권잡지」를 창간하고 대내외 인권단체들의 주장에 대응하고 있다. 이들 인권연구회와 잡지는 개인에 대한 자유의 허용은 대다수 국민들의 여망과 요구 등 각국 실정에 맞춰 결정되어야 한다는 식으로 인권단체들의 주장을 반박하며 중국정부의 인권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35) 錢其琛 외교부장이 93년 11월, ICRC가 중국내 교도소시설 방문을 요청해 올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계기로 ICRC대표단이 94년 1월과 4월 2차례 방중하여 외교부·사법부 관계자와 비공개 회담을 가졌으나 면담인사의 범위, 교도소 개방폭을 둘러싼 이견으로 사실상 협상이 중단된 상태에 있었다.

서방국가들의 인권압력에 대한 중국의 대응태도를 분석해보면 천안문사태 이후 세 단계로 발전해 왔음을 볼 수 있다.<sup>36)</sup> 천안문사태 직후에는 인권압력에 대해 주권침해라고 주장하며 강경하게 대응하였다. 그러나 곧 인권압력이 중국 국내정치에 위협적인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함과 동시에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국제사회의 인권규정에 타협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대내외적인 유화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최근들어 다시 강경노선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싱가포르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과 제3세계가 각 국가의 문화적·경제적 상황에 맞는 고유한 인권을 주장하고 나섬에 따라 중국도 ‘중국식’의 인권개념을 강조하며 보다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형편이다.

### 3. 小 結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외에서 제기된 인권문제에 대해 사회주의 국가들은 한편으로 이를 반박하는 성명 발표와 자국의 인권문제 부재 천명 및 대내통제를 강화하는 등 강경책으로 대응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사회의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제사회의

36) John F. Copper, "Peking's Post-Tianenmen Foreign Policy: The Human Rights Factor," *Issues & Studies* (October 1994).

압력을 피하려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들의 인권정책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사회주의권의 인권정책을 변화시킨 동인을 살펴보면 첫째, 사회주의 인권정책의 변화는 사회주의 인권개념에 대한 정당성의 상실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소련의 한 잡지가 “인권문제는 국가와 사회에서 한 개인의 지위를 결정하는 권리의 소유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국가, 민주주의, 권리, 합법성, 계급투쟁과 같은 사회현상과 연관되므로 이념투쟁의 초점이 된다”<sup>37)</sup>고 언급했듯이 인권은 무엇보다도 체제대결이라는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색채를 띠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적 자유와 경제평등을 이념으로 내세워 온 사회주의 국가의 인권개념은 2차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에서 정당성을 상실해 왔으며, 개인의 자유와 보편적 기본권에 근거한 인권개념이 확산됨으로써 사회주의 체제의 인권정책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둘째, 국제기구 및 국제인권단체들의 활동을 들 수 있다. 사회주의 국가의 집단적 인권유린 사태를 개선하는데 있어서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특정국가의 회담이나 협상만으로는 역부족이었다. 자본주의 對 사회주의라는 냉전적 대

37) 이장희, “Helsinki 「인권규정」이 분단국가에 주는 의미,” 「통일문제연구」, 제1권 제3호 (1989 가을), p. 44에서 재인용.



결구도 속에서 국가 대 국가의 인권공세는 아무리 합리성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자칫 정치적 공방으로 치부되기 쉽다. 러시아와 동독의 경우 CSCE와 UN 등 집단안전보장체제 내에서 인권문제를 정치군사적 협상과 병행함으로써 실질적인 결실을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사회주의 국가가 공식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국제기구와 단체를 통해 인권보호의 공감대를 확보하고 국제사회가 요구하고 압력을 가할 때 정책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사회 내의 이질적 집단 혹은 갈등집단의 인권문제를 거론함으로써 효과적인 인권개선이 이루어졌다. 어느 사회이든 인종과 민족 혹은 출신지역, 신분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사회갈등과 계층현상이 존재하기 마련이지만 특히 인권유린이 차별화된 사회문화적 집단에 가해졌을 때 갈등은 더욱 심화되는 것이 사실이다. 러시아의 경우에는 유대인이라는 이질적 민족집단이 인권문제의 촉발요인이 되었는데 하면 동독의 경우는 서독에 흩어진 이산가족이 이질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사회의 인종적, 문화적, 종교적 이질집단을 중심으로 인권문제를 제기함으로써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인권개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인권운동조직과 같은 국내의 체제저항세력과의 연계 속에서 효과적으로 변화를 유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국내에서 정권으로부터 인권탄압으로 희생되거나 억압받고 있는 인

물을 중심으로 인권운동단체가 결성되고 체제저항세력이 생성될 경우 국제 인권기구는 해당국가에 실질적인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된다.

요컨대 사회주의 인권정책의 변화는 체제 내의 구조적 모순과 국제인권단체들의 조직적인 압력 및 민족·계층적 이질 집단의 존재와 생성여부에 기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권논쟁은 국제사회에서 자칫 정치적 공방으로 비취짐으로써 실효성을 거두지 못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북한이 인정하는 국제사회 혹은 국제기구를 통해 인권정책의 변화를 시도하고 국제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내부에 복잡군중으로 분류된 종교인, 이산가족, 북송일 본인처 등의 집단들을 면밀히 추적하여 이들에 대한 인권유린 실태를 폭로함으로써 국제적 관심을 제고시키고 자생적 인권보호 세력을 형성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 第Ⅲ章 北韓의 人權實態와 國際社會의 對北韓 人權問題 提起 現況

#### 1. 北韓 人權政策과 人權實態

##### 가. 북한 인권정책의 특징

##### (1) 인권의 개념

북한의 「조선말대사전」은 인권을 “사람이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권리 곧 사람의 자주적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다.<sup>38)</sup> 사회적 존재로서의 사람의 인권은 그의 정치생활, 경제생활, 문화생활 등 사회생활에서 표현되며 따라서 인권은 “온갖 착취와 억압이 청산되고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된 사회주의 제도에서만 철저히 보장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북한의 「정치용어사전」은 인권에 대해 “인민이 응당 가져야 할 정치적·경제적·문화적 및 사회적 제반권리”라고 규정하고 “계급적 원수들에게 철저한 독재를 실시하면서 노동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에게는 참다운 민주주의적 권리를 철저히 보장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38)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대사전 (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p. 1696.

인민이 가져야 할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및 사회적 제반권리를 말한다....인권옹호는 착취와 억압으로부터 인민대중을 해방하기 위한 투쟁에서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의 기본이며 출발점으로 된다. 인 권은 온갖 착취와 억압이 청산되고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된 사회주의 제도하에서만 철저히 보장된다....이러한 권리들은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튼튼한 물질적 조건에 의하여 담보된다. 우리 인민 정권은 계급적 원수들에게 철저한 독재를 실시하면서 로동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에게는 참다운 민주주의적 권리를 철저히 보장한다.<sup>39)</sup>

북한은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인권에 대한 개념을 자주권, 생존권, 평등권, 발전권을 포함한 사람이 사회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권리에 관한 문제로 정리하고 있다.<sup>40)</sup> 북한에서는 인권이란 개념을 처음부터 주체사상의 자주성과 관련지어 보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의 인권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즉 인권이란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이 갖게되는 ‘자주적 권리’를 의미하며 정치, 경제, 문화, 도덕 등 사회활동에서 자주성을 요구하는 인간의 권리를 말한다. 북한이 말하는 인권은 “착취와 억압으로부터 인민대중을 해방하기 위한 투쟁에서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의 기본이며 출발점”이라는 김일성의 교

39) 사회과학원, 「정치용어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0), p. 718.

40) 북한 외교부 대변인 인권문제 담화발표(95.2.8) 내용. 「조선중앙방송」, 1995.2.8.

시를 따르고 있는 것이다.

1994년 11월에 발표한 논문 “사회주의는 과학이다”에서 김정일은 자주적 권리로서의 인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인권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외세의 지배를 받는 나라 인민들에게는 결코 인권이 보장될 수 없다. 인권은 정치, 경제, 사상,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들이 행사하여야 할 자주적 권리이다. 제국주의자들이 말하는 인권이란 돈만 있으면 별의별 짓을 다 할 수 있는 부자들의 특권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실업자들의 노동할 권리, 무의탁자들과 고아들의 먹고 살 권리 같은 것은 인권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근로자들에게 초보적인 생존의 권리를 주지 않고 반인민적 정책과 인종적 및 민족적 차별정책, 신민주의 정책을 실시하는 제국주의자들은 인권에 대해 말할 자격도 없다. 인권의 첫째가는 원쑤는 인민들의 자주권을 유린하며 인권옹호의 간판밑에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는 제국주의자들이다.<sup>41)</sup>

북한은 또한 평등권을 내세워 헌법에 선거권과 피선거권, 언론·출판·집회·결사·시위·신앙의 자유·주택, 인신에 대한 불가침 및 기타 공민의 기본적 권리들을 규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노동에 대한 권리, 의식주 보장, 무상치료 등 생존권을 보장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고 있다고

41) 「로동신문」, 1994.11.4.

주장한다. 인권옹호와 인권보장은 인민이 나라의 주인인 사회주의 제도하에서만 가능하다거나 사회보장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인권이 보장된다고 하는 북한의 주장은 집단주의적 인권개념을 중시하는 사회주의의 특성을 대변해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최근에 제3세계가 주장하는 발전권을 하나의 인권으로 주장하고 있다. 개발도상국들은 빈곤 속에서 참된 인권이란 존재할 수 없다고 하면서 발전권도 고유의 인권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북한도 이러한 측면에서 발전권을 인권의 하나로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서구의 인권개선 요구를 주권침해 내지 내정간섭으로 규정함으로써 인권문제 제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sup>42)</sup>

## (2) 인권정책의 특징

북한의 인권정책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료는 북한의 헌법과 일부 수집가능한 형법이나 형사소송법 등이다. 1992년 4월에 개정된 북한 신헌법에서는 과거 구헌법의 구성에서 두 번째 장을 차지했던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가 정치, 경제, 문화, 국방 다음으로 밀려났다. 이같은 현상은 북한헌법 체계 내에서 인권조항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의도적으로 격

42) 제성호, “한국의 대북 인권정책 방향,” 『북한연구』, 제6권 제2호 (1995 여름), pp. 66~67.

하된 것일 수도 있다는 해석을 할 수 있다.

북한의 인권정책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북한의 인권정책은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정치와 분리될 수 없는 강한 정치성을 띠고 있다. 북한헌법 제11조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라고 규정하여 노동당의 지도적 지위를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북한은 ‘조선로동당규약’이 헌법의 상위 규범임을 명시하고 있는 독특한 법체계를 갖고 있다. 노동당의 결정과 지시는 실질적으로 헌법에 우선하여 주민들의 활동을 지도한다. 노동당의 결정과 지시는 수령인 김일성과 김정일의 교시에 의존한다. 「조선로동당규약」 전문에는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노동당규약 위에 김일성교시가 최고 상위 규범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소위 북한의 10계명으로 되어 있는 「유일사상 체계확립의 10대원칙」은 북한의 모든 주민생활을 규제하는 궁극적인 규범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권의 해석과 적용이 정치성을 떨 수밖에 없다. 김정일이 당권을 장악한 1974년부터 당원들과 전주민에게 10대원칙을 하달하고 오로지 김일성을 충성으로 모시고(제2원칙) 김일성의 권위를 절대화하며(3원칙) 교시를 신조화하고(4원칙) 교시집행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제5조)고 명시하였다.<sup>43)</sup>

특히 북한의 형법 내용중 정치적 유추와 자의적 해석을 가능케 하는 반인권적 성격을 강하게 띤 조항들이 있다.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형법 제10조에서 유추해석권을 인정하는 것이나 형법 제124조의 “리기적 목적... 엄중한 결과,” 제128조의 “국가기관의 권위를 훼손시킨 경우,” 제131조의 “과렴치한 불량자적 행위” 등과 같은 애매모호하고 추상적 용어를 사용하여 법률의 자의적 해석을 가능케 하는 조항은 인권탄압을 위해 악용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크다.<sup>44)</sup>

둘째, 집단주의 원칙을 인권정책의 근간으로 삼고 있다. 헌법 제63조는 북한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하나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집단주의 원칙은 헌법에서 뿐만 아니라 당정책과 김일성·김정일 교시를 통해 북한사회에서 끊임없이 강조되고 있다. 김정일도 사회주의제도는 개인의 요구와 이익을 우선하는 자본주의적 개인주의와는 달

43) 김정일, “전당과 온 사회에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자,”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pp. 91~124;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원칙」(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4).

44) 통일원, 「북한의 인권실태」(서울: 통일원, 1994), p. 9.



리 사회적 집단의 요구와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집단주의적 생명관에 기초하고 있음을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서 역설한 바 있다.<sup>45)</sup>

북한이 집단주의를 이처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집단우위를 강조하면서 집단주의와 그에 기초한 헌법이론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도 얼마든지 제약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북한은 집단주의 생활원리를 설명하면서 “국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헌법 제82조)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 데서도 당과 사회조직의 목적을 위해서는 개인의 이익과 권리가 얼마든지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개인의 이익을 집단의 요구에 희생시키는 것이 참된 집단주의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인권은 당과 정부, 사회단체의 결정에 철저히 예속되어 있다.

셋째, 인권보호의 물질적 기초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적·시민적 자유보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권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 사회주의권이 공유하는 특성이며 북한 인권정책의 특징이다. 정치적·시민적 권리에 관해서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연령이 72년 헌법에서 17세로 낮추어 졌으

45) 김정일,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87.7.15),”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p. 162~65.

나 그 이외의 권리에 관해서는 설명하는 바가 없다. 그 대신 물질적 행복추구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신헌법 제64조와 제65조는 권리와 자유의 실질적 보장,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국민의 권리의 평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근로대중의 수중에 있는 생산수단은 그들의 권리와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물질적 기초이다”라며 생산수단의 사회주의적 소유는 모든 근로대중이 광범한 권리와 자유를 실질적으로 누리는데 필요한 물질기술적 수단과 조건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회주의적 생산제도가 비효율적이라는 사실이 경험적으로 입증되었고 북한의 경제도 매년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북한이 인권보호의 물질적 기초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생산수단의 공유하는 사회주의 체제를 지탱해 가기 위한 체제수호적 전략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 나. 북한의 인권실태

북한의 신헌법에 나타난 국민의 권리는 언론, 출판, 결사, 집회, 군중대회 및 시위의 권리, 신앙의 자유,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의 원칙, 노동권, 휴식권, 의료권, 남녀평등, 교육권 등 대부분의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및 경제적 권리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들이

문자 그대로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을 던져주고 있다.

먼저 북한은 헌법 제65조에 “국민은 국가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같은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평등은 헌법상 규정된 권리의 실현에 있어서의 평등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북한은 해방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성분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주민들을 출신성분과 사회성분별로 구분하고 사회적 혜택을 차별적으로 배분하는 계급정책을 추진해 왔다. 성분에 따라 핵심군중, 기본군중, 복잡군중으로 구분하여 각종 물질적 수혜와 사회적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신분제도와 같은 계급정책을 실시하고 있다.<sup>46)</sup>

성분정책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복잡군중은 과거 지주·자본가 가족, 일제시 공직자 가족, 종교인 가족, 중국·일본귀환민, 한국전쟁시 부역자 가족, 월남자 가족(이산가족) 출신 등이다. 이들은 과거에 불순분자로 처형되기도 하였고 많은 차별대우를 받아 왔다. 이들은 또한 강제이주를 통한 격리수용의 대상이 되는 제재대상, 항상 동태를 감시당하는 감시대상, 집중적인 교양학습을 통해 체제순응적인 대상으로 교육하는 포섭대상 등으로 구분되어 관리되어 왔다.

---

46) 차별적 성분정책의 시행과정과 최근의 변화에 대해서는 제5장 제1절에서 보다 상세히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생략함.

이와 같은 경직된 성분정책은 1980년대 중반 이후, 특히 1993년 김정일의 ‘광폭정치’ 등장 이후 완화되고 있으며, 이들 가족과 자녀들에 대해 가해졌던 대학진학, 입당, 군장교 등의 자격제한도 완화하는 변화양상을 보이고 있다.

북잡군중 혹은 기본군중으로 분류된 북송교포들의 인권유린실태가 일본방문객들을 통해 전해지기 시작하면서 최근 국제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아시아워치와 미네소타변호사 국제인권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959년부터 1982년 사이에 6,637명의 일본인처를 포함하여 총 93,000명의 일본거주 한국인이 북송되었다.<sup>47)</sup> 북한정부는 북송당시 일본인처(6,637명중 1,828명은 일본 시민권 소유)들이 2~3년에 한번 씩 일본을 방문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일본에 돌아온 사람은 한 명도 없었으며 소식조차 단절된 사람도 많다. 북송교포들중 일부는 일본에서 돈을 송금하여 부유하게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형편없는 대접을 받고 있다. 이들을 멸시하는 어조로 북한관리들은 ‘귀포’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런 처우 때문에 일부 북송교포들은 정신착

47) 아시아감시위원회·미네소타변호사국제인권위원회, 송철복 외 역, 「북한의 인권」(서울: 고려원, 1990), p. 76. 일본 법무성통계에 따르면 남편인 재일동포를 따라 북한으로 이주한 일본인 부인들은 1,831명(사망자 포함)이며 이들 부부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까지 합하면 6,679명으로 밝혀져 있다.

란증에 걸렸고 심지어는 고통을 받아 자살한 사람도 있다.<sup>48)</sup> 일부는 중국이나 소련으로 탈출을 시도하다 붙잡혀 처형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소원이나 항의를 제기한 북송교포들은 수용소에 수감되거나 공개처형된 것으로 알려졌다.<sup>49)</sup>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형식적으로 만17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주어져 있고 민주적 4원칙도 명문화되어 있다. 그러나 연좌제에 의한 선거권 박탈이나 후보자 추천과 등록, 투표방법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의 선거는 노동당에 대한 인민의 신임을 확신시키고 일당독재를 정당화하며 대외적으로 민주체제임을 선전하기 위한 제도로 활용되고 있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및 시위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하나 표현의 자유는 당의 영도와 국가의 통제하에서만 실질적으로 보장된다. 언론은 노동당 대변자로서 대중선동, 대중조직, 대중비판 및 폭로 기능을 가진다. 각종 출판물 역시 김일성·김정일의 치적 홍보나 정부선전용에 불과하다. 집회는 당정책 합리화 수단으로 이용되고 허가된 시간에 허가된 장소에서만 허용된다. 결사체는 대부분 노동당 외곽단체로서 누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신앙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으나 동시에 “누구든지 외세를

---

48) 위의 책, p. 77.

49) 위의 책.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여 정치적 제약을 가하고 있으며, ‘신소와 청원권’이 보장되어 있으나 신소와 청원을 할 경우 국가보위부나 사회안전부가 필적 감정을 통해 신소자를 색출·처벌하고 강제 이주시키는 경우가 많다. 직업선택의 자유와 취업의 완전한 보장을 명시하고 있으나 직장배치는 전적으로 당의 지시에 따른 ‘무리배치’가 이루어지고 취업대상자는 시도 행정위원회의 노동부 또는 간부부를 통해 배치장 혹은 소개장을 발부받아야 취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은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것과 다름없다.

형법에 의한 인권유린실태는 보다 심각하다. 김일성은 “우리의 법은 사회주의 사회의 법이며 프롤레타리아독재의 기능을 수행하는 우리 국가주권의 법입니다”<sup>50)</sup>라며 법적용과 법집행의 계급성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계급적 본질과 임무에 따라 사회주의 제도를 부정하는 ‘계급적 원썩’들에 대해서는 무자비한 탄압을 실시해 왔다. 또한 1974년에 공포된 ‘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원칙’에 따라 김일성부자의 권위와 위신을 훼손하는 행위는 사소한 요소에 대해서도 가장 단호한 징벌을 가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북한에 인권탄압을 자행하는 기구·제도는 당

---

50) 김일성, “우리 당 사법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김일성저작집 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 219.

조직지도부와 국가보위부, 사회안전부 및 정치범을 수용하는 ‘통제구역’ 등이라 할 수 있다. 당 조직지도부는 김정일의 직접 관장하에 ‘3선·3일보고 통제체제’를 통해 관료들에 대한 물리적 감시와 통제 및 ‘비준제도’에 의한 인사관리를 통해 충성과 효성을 도출시키는 역할을 한다.<sup>51)</sup> 조직지도부는 당 세포조직을 가동하여 당원 상호간은 물론 일반인민들의 사상과 생활을 감시·통제한다.

국가보위부는 반당, 반체제음모자 색출·검거 및 특정지역 내에 잠입한 간첩의 색출과 간부들과 인민들의 동태감시, 국내외 정보수집·분석, 남한 정보수집·분석, 정치범 동태과약 등을 통해 체제유지를 주요임무로 삼고 있다.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일이지만 75년 10월 의문의 교통사고로 죽은 전 부수상 남일의 죽음은 국가보위부의 활동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을 정도로 인권보호는 취약한 상태에 있다.

사회안전부는 일반 치안유지를 담당하는 기관이지만 가장 일선에서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사회안전부는 사회건설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반체제적 요소를 적발·제거하고 전인민을 김일성·김정일 유일체제하로 동원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북한은 교도소란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구금소, 갱생원, 노동교화소, 청소년교화원, 보안교도소, 격리수용소,

51) 전현준, 「북한의 인권실태 연구」(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p. 77.

요양소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52)</sup> 이 중에서도 정치 사상범을 수용하는 특별독재대상구역은 노동당조직지도부 지도하에 실질적으로는 국가보위부 및 사회안전부가 집행하고 있다. 수용소는 12~14개소에 15만여 명의 주민들이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최근 국제적 인권압력과 정세변화를 의식하여 특별독재대상구역을 3~4개 정도로 축소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53)</sup>

김일성이나 김정일 후계체제에 반대하는 정치범은 벽지나 고립된 시골에 있는 특별독재대상구역에 보내진다. 대부분의 수용소들은 광산지역이나 중국과의 국경에 인접한 산악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수용소들은 엄격한 경비와 철조망으로 일반인의 접근이 불가능하다. 증언에 의하면 수감자들은 비좁고 비위생적인 감방이나 초가집에 갇혀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54)</sup> 정치범이 가족과 함께 수감되면 가족의 재산은 몰수되고 공민증은 무효화된다. 어린이들은 취학이 금지되고 면회나 편지 및 통신접촉이 금지되며 생필품 배급과

52) 아시아 감시위원회·미네소타변호사 인권위원회, 송철복 외 역, 「북한의 인권」, p. 112.

53) 전현준, 「북한의 인권실태 연구」, pp. 83~84; 통일원, 「92 북한개요」 (서울: 통일원, 1992), p. 275. AI 방북보고 내용 (95.5.11) 및 「95연례 인권보고서」 (95.7) 참조.

54) 강철환·안혁, 「대왕의 제전 1」 (서울: 香實, 1993), pp. 57~58.



의료보장도 박탈된다. 이들은 자급자족을 해야 하며 불만을 표시하거나 탈출을 기도하면 구타 또는 총살형을 받는다고 한다.<sup>55)</sup>

북한의 공개처형의 인권유린 실태는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1993년 10월 국제사면위원회가 보고서를 통해 공개처형의 실상을 세계에 폭로하였다. 사형판결을 받은 죄수가 “어린이들을 포함하여 노동자·학생들이 집결한 대중모임 앞에 끌려 나와 형집행 담당관리들에 의해 죄목과 판결문이 낭독된다. 형집행도 이런 모임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으며....수용소내에서는 동료들이 모인 앞에서 사형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발표하였다.<sup>56)</sup> 보고서는 83년 당시 37세인 김지수와 다른 두 명의 광부들이 함남 검덕광산에서 공개처형되었으며, 92년 11월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한 남자가 함흥시에서 공개처형 당한 사실을 밝혀냈다. 후자의 공개처형 대상은 30세 남자인 주순남으로 밝혀졌으며 공개처형 공고문이 94.8.27 안기부에 의해 공개되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이와 같이 북한은 평등권과 언론·집회·출판·결사 및 이동의 자유는 물론 정권과 체제에 대해 어떠한 비판도 허용

55) 위의 책, p. 105.

56) 국제사면위원회, 「북한: 국제사면위원회의 우려」, pp. 20~21.

하지 않으며, 이에 반하는 자는 혹독하게 처벌한다. 사회주의적 인권개념과 체제의 특수성을 이유로 주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정치적·시민적 자유를 박탈하고 있다. 집단주의적 인권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워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당과 수령의 지시에 절대 복종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주민들의 인권은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 2. 國際社會의 對北韓 人權問題 提起 現況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에 대해 국제사회가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88년 경으로 보인다. 1988년 12월 아시아감시위원회(Asia Watch)와 미네소타변호사 국제인권위원회(Minnesota Lawyers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mmittee)가 「북한의 인권」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북한정부의 조직적인 인권 탄압과 자유억압 및 통제·감시 실태를 폭로함으로써 국제사회는 물론 남한도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진정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sup>57)</sup> 이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에 관한 정보부재와 북한에서 거주이전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신앙과 종교의 자유가 제한받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또한 북송교포들의 신체적, 정신

57) 아시아감시위원회·미네소타변호사 국제인권위원회, 송철복 외 역, 「북한의 인권」.

적 인권유린 실상과 공개처형 및 특별독재대상구역에서의 인권억압 실태에 대해서도 폭로하였다.

동보고서는 또 불평이나 불복종 등의 태도가 눈에 띄어 미움을 사거나 정치적으로 호감을 사지 못하는 주민들은 계급이 강등되고 가족들과 더불어 벽지로 추방되어 강제노동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반정부인사로 일단 낙인찍힌 사람들은 체포되어 구타 등 여러 가지 학대를 받으며 투옥당하고 강제노동을 해야 하는데 이들에게는 식량배급도 극히 제한되어 굶어죽은 경우도 있다”고 폭로하는 등 북한의 인권유린실태에 대해 비교적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발표하였다.<sup>58)</sup>

국제사면위원회(AI)는 1989년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배경 설명”을 출판·보고하고 그 이후 매년 북한인권실태에 대해 분석·평가해 오고 있다. 특히 1993년 10월에는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단독보고서를 통해 4~5명의 인사와 북송교포들의 인권상황을 우려한다는 내용을 북한당국에 보내 이들의 처우실태에 대해 공개적으로 해명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지금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북한당국에 서신을 보냈다. 94년 7월 30일 승호마을에 수용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49명의 정치범들의 명단과 인권실태를 폭로하

---

58) 위의 책, p. 34.

고 이들의 형편과 친척들의 행방을 공개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조호평과 시바타 고조, 신숙자 등의 행적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였다.

95년 1월 중순경 국제사면위원회 산하의 프랑스, 독일, 필리핀 등 13개국의 50개 인권단체가 북한으로 귀국한 재일조선인 및 일본인의 안부를 우려하여 북한당국에 이들의 인권회복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하였다. 이는 그동안 국제사면위원회가 보낸 서한에 대해 북한당국이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여러 국가들이 연합운동을 일으킴으로써 북한의 인권문제가 국제사면위원회 지부의 해당국가를 통해 국제적 관심을 촉구하고자 취해진 조치라고 볼 수 있다. 또한 95년 1월 20일 「노르웨이 앰네스티 그룹 30」은 김정일 앞으로 서한을 보내 도쿄에 거주하고 있는 재일한국인 조행(曹幸)씨의 오빠인 조호평 씨의 가족 5명이 지난 67년 이후 소식이 단절된 것과 관련, 이에 대한 안부를 확인해 주도록 촉구하였다.

국제사면위원회는 95년 4월 말에 개최된 ‘평양축전’ 기간 동안 북한을 방문하고 북한인권상황에 대해 발표하였다.<sup>59)</sup>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에는 현재 3개의 강제수용소에 반국가행

---

59) 국제사면위원회 방북내용, “Amnesty International Delegation Visits North Korea, Discusses Legal Reforms and Prisoner Cases,” (95.5.11).

위를 한 240명을 포함해 약 8백~1천여 명의 양심수를 수용하고 있음을 북한당국이 시인했다. AI는 또 지난 60년대 초 일본에서 북한으로 간 북송교포중 일본국적의 시바타 고조(한국명 김호남)씨가 간첩죄로 26년 동안 수감되어 있다가 지난 90년 초 석방되었으나 90년 3월 교통사고로 친척들과 함께 사망한 것으로 북한당국이 밝혔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AI보고서는 시바타 고조씨가 64년 간첩혐의로 2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반국가음모 선동죄’로 6년간의 추가형을 선고받았으나 시바타 고조씨가 6년의 추가형 선고에 대해 모르고 있었으며 공식적인 재판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AI는 또 조호평이 지난 67년 간첩죄로 투옥되어 복역하다 지난 74년 10월 탈옥한 후 군함정을 납치해 해외 탈출을 시도하다 북한군의 공격을 받고 함정이 폭발되면서 부인과 자녀3명과 함께 사망했다고 발표하였다.

국제사면위원회는 95년 7월 연례인권보고서를 통해 북한 인권상황을 상세히 보도하였다.<sup>60)</sup> 수백명의 정치범들과 양심수들이 불법으로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확인할 길은 없다. 김덕환이라는 한 기술자는 소련유학시절 소련시민과 결혼했다는 이유로 1961년 말 혹은 62년 초 신앙에 수감되었으며 1966년 이후 소식이 끊겼다. 또한 90년까지 승호마

60) AI, “KOREA: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in *Amnesty International Report 1995* (London: AI, 1995), pp. 183~85.

을<sup>61)</sup>에 수용되어 있던 수십명의 정치범들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으며 이중에는 60년대 이후 소식이 단절된 역사학자 리나영과 20여 명의 북송교포가 포함되어 있다고 발표하였다. 국제사면위원회는 또한 북한에서 공개처형이 실행되고 있음도 폭로하였다. 국제사면위원회는 또 신숙자와 그 딸들은 신숙자의 남편이 해외에 정치적 망명을 요청한 이후인 1987년에 구금되었다고 알려졌는데 북한당국으로부터 이들이 평양에서 살고 있다는 답변을 받아 내었다.

1994년 11월 17~19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29차 아시아·태평양 의원연맹(APPU) 총회는 남한 대표단이 제출한 “북한내 인권개선과 억류된 한국인의 조속 송환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북한당국이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가족들과 재회할 수 있도록 고상문 등 납북인사들을 하루속히 돌려 보내줄 것을 촉구하였다. 북한은 이 「결의안」이 채택된 후 즉각적인 대응태도를 보이지 않다가 국제적 여론의 악화를 불식시키기 위해 94.12.1 ‘조선인권연구협회’의 이름으로 반박성명을 발표하는 곤혹스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美헤리티지재단은 1992년 7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인권부재 실상을 심포지움 보고서 「북한의 인권」에 담아 출판

---

61) 승호수용소는 수감자들을 다른 장소로 이주시킨 후 폐쇄된 것으로 보인다.

하였으며 북한에서는 인권문제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국제언론인협회(IPI)도 1995년 5월 16일 북한의 인권 상황을 포함한 북한의 언론의 자유와 남북이산가족의 자유로운 서신왕래 등을 촉구하는 3개항의 대북결의안을 채택했다. IPI는 결의안에서 “남북이산가족간의 자유로운 서신왕래라도 시급히 이루어지도록 북한당국은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북한당국은 민주적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언론과 의사소통의 자유를 허용하고 모든 언론인들의 자유로운 출입국과 여행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sup>62)</sup>

미국무부는 1993년 1월 「'92 각국 인권실태 보고서」에서 “북한정권은 주민들에게 기본적인 인권마저 허용치 않고 탄압통치를 계속하는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국”으로 평가하였다. 또 1994년 2월의 「93년도 연례 인권보고서」에서도 “북한은 노동당의 절대적 지배아래 있는 독재국가로서 북한주민들의 기본인권이 계속 부정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sup>63)</sup> 미국무부는 북한 내의 12개 정치범수용소에 약 15만 명의 정치범과 그 가족들이 수용되어 강제노동을 통한 재교육을 받고 있고 평양거주에 대한 허가는 엄격히 통제되어 장애인은 평

62) 「세계일보」, 1995.5.17.

63) U.S. Department of Stat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 *1993 Human Rights Report* (Washington, D.C.: Department of State, 1994).

양에 살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도 폭로하였다.

그러나 미국정부는 미국무부 차원에서 연례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인권문제를 거론하고 있지만 북한과 미국간의 쌍방 외교관계에서는 인권문제가 공식적으로 심각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핵문제를 둘러싼 북·미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북한의 인권문제를 거론해 왔다. 김일성 사후에도 북·미회담을 통해서 출범을 앞둔 김정일 정권의 인권정책에 대해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러시아는 1993년 3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49차 UN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세계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64)</sup> 러시아 최고회의 인권위원회는 1993년 6월 북한의 시베리아벌목장의 인권침해 사례가 심각함을 확인하고 개선이 안될 경우 러·북한간 임업협정을 폐기할 것을 건의하여 러시아 정부가 북한측에 폐쇄경고를 전달하였다. 이러한 러시아의 압력은 영향력을 발휘하여 1994년 2월 24일 북한은 벌목노동자들의 인권개선을 보장한 새로운 임업협정에 서명하였다.<sup>65)</sup> 이 규정에 의하면 벌목노동자들은 하루 8시간 노동과 러시아를 떠나 다른 나라로의 자유로운 여행, 러시아 사법기관의 벌목장 내 조사권 등을 허용하는 새로운 임업협정에 서명한 것이다.

64) 통일원, 「월간 북한동향」, 제144호 (1993.6), p. 59.

65) 「동아일보」, 1995.2.25.



이처럼 북한의 인권문제는 북한의 인권상황이 열악해지고 다른 한편으로 국제인권단체들의 팽창에 힘입어 1988년 이후 점차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아시아감시위원회가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감시를 하고 있으며, 국제사면위원회, 헤리티지재단 등의 인권기관은 물론 아·태의원연맹, 국제언론협회, 미국, 러시아 정부 등 인권관련 단체 및 주변국가들이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도 EU 및 미국, NGO 대표들이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시하였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경제사회적 개방화가 불가피한 북한의 사정을 감안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심각한 국제적 현안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 第Ⅳ章 人權問題에 대한 北韓의 認識과 對應方式

### 1. 人權問題에 대한 北韓의 認識

탈냉전 시기 이전 북한은 인권문제를 정치경제 문제, 즉 체제경쟁과 관련지어 인식하였다. 따라서 인권문제는 자본주의적 불평등에 기인하고 있으며 사회주의적 생존권의 보장으로 해결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인권문제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김일성의 발언에 잘 드러나 있다.

현시기 지구상에서 사회적 불평등이 가장 심하고 인민들에 대한 억압과 인권유린이 가장 혹독한 나라는 바로 서방 제국주의 나라들이며 제국주의자들이 만들어 놓은 괴뢰국가들입니다. 민주주의가 없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민대중에게 인권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리치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인민대중은 인간의 존엄과 정치적 권리를 전혀 못가지며 지어는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빼앗기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인권>이 있다면 한줌도 못되는 특권계층이 근로대중의 피땀을 짜내어 부귀영화를 누리며 인민들을 억압하고 멸시할 권리가 있을 따름입니다.<sup>66)</sup>

또한 김일성은 “진정한 인권옹호는 오직 인민이 정권을 쥐

66)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3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6), p. 536.

고 있는 나라에서만 있을 수 있습니다”<sup>67)</sup>라고 함으로써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사회주의 체제의 정치경제적 우월성을 부각시키려는 목적에서 인권문제를 이해하고 활용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탈냉전 이후에 들어서 북한은 인권문제를 보다 심각하게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즉 북한은 서방세계가 제기한 인권문제를 단순한 체제경쟁이나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차원이 아니라, 제국주의의 ‘평화적 이행’전략의 일환으로 보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중국 등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보는 관점과 견해를 같이하는 부분이다.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국가들은 사회주의에 대한 힘의 정책을 견지함과 동시에 사회주의를 내부로부터 와해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평화적 이행’전략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인식을 가장 먼저 표출한 것은 역시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를 목도한 직후인 김일성의 1990년 신년사이다. 김일성은 1990년 신년사에서 “제국주의자들은 <평화>와 <완화>의 막뒤에서 인민들을 무장해제시키고 자주와 진보의 길로 나아가는 나라들에 대한 침략을 강화하고 있으며 <원조>와 <협조>의 간판밑에 다른 나라들에 대한 간섭과 예측화 책동을 로골적으로 강행하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하

67)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34」, p. 397.

였다. 자본주의 국가들의 인권문제 제기의 심각성은 1990년 5월 김일성의 최고인민회의 제9기 시정연설에서도 되풀이 된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하여서는 <민주주의>와 <인권 옹호>의 간판을 들고 제국주의자들이 감행하고 있는 반사회주의 책동을 철저히 짓부셔버려야 합니다....지금 제국주의자들은 힘의 정책을 견지하면서 사회주의를 와해시키기 위한 이른바 <평화적 이행>전략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사상문화적으로 침투하여 인민들의 혁명의식을 마비시키고 <원조>를 미끼로 하여 경제적으로 매수하며 반사회주의 분자들을 부추겨 사회정치적 혼란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사회주의 나라들을 자본주의에로 되돌려 세우려고 책동하고 있습니다.<sup>68)</sup>

이러한 김일성의 발언은 즉각 당을 비롯한 정책입안자들에게 영향을 줌으로써 이 시기부터 북한은 인권문제를 ‘평화적 이행전략’의 일환으로 간주하고 서방세계의 인권문제 거론에 대해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대처하려는 인식을 갖게 된다. 노동당 기관지 「근로자」는 “인권문제는 세계적인 주목을 끄는 첨예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sup>69)</sup>고 주장하고 자본주

68) 김일성, “우리나라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 (1990.5.24).

69) 김창렬, “제국주의자들이 떠벌이고 있는 <인권옹호>와 그 반동적 본질,” 「근로자」 (1990.2), p. 92.

의 국가들의 ‘평화적 이행전략’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이 내세우고 있는 <평화적 이행>전략은 그들이 상투적으로 쓰는 반혁명적 양면전술책의 하나로서 사회주의 나라들을 자본주의에로 되돌려 세우려는 가장 반동적이며 교활한 범죄적 전략이다. <평화적 이행>전략의 본질은 사회주의 나라들에 대한 사상문화적, 정치경제적 침투를 강화하여 인민들의 혁명의식을 마비시키고 자본주의를 되살림으로써 사회주의로부터 자본주의에로 되돌아가게 하려는데 있다.<sup>70)</sup>

전인철은 ‘평화적 이행’전략이 한국전쟁중인 1950년대 중엽 딜레스에 의해 처음 제기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자본주의 국가들이 사회주의를 무력으로 점령할 수 없게되자 ‘정신적 압력’과 ‘선전적 압력’ 등을 통해 사회주의 국가들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하였다.<sup>71)</sup> 이를 위해 언론수단과 문화교류 등을 이용하여 사회주의 국가들에 ‘자유사상’을 불어넣고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변질시켜 사회주의 제도에 대한 불신감과 반항심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그는 또 사회주의에 대한 ‘정신적 압력’과 ‘선전적 압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 바로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라는 것으로 해석한다.<sup>72)</sup>

70) 전인철, “제국주의자들의 <평화적 이행>전략은 파산을 면치 못한다,” 『근로자』 (1990.11), p. 85.

71) 위의 책, p. 86.

김정일은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에서 인권문제에 대한 인식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인민적 성격과 부르췌아 민주주의의 반인민적 성격은 인권문제에서 뚜렷이 나타납니다....지금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인권옹호자>로 자처하면서 사회주의를 헐뜯고 있지만 진짜 인권유린자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입니다....미제의 사측밑에 남조선에서 감행되는 가혹한 인권유린행위는 제국주의자들이 부르짖는 <인권옹호>라는 말이 얼마나 위선적이며 파렴치한 것인가 하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sup>72)</sup>

이와 같이 북한은 현재의 국제정세는 인권문제를 둘러싸고 자본주의권과 사회주의권의 치열한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국가들이 사회주의권과 개도국들에게 정치적 압력을 가함으로써 사회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목적에서 인권문제를 거론한다고 보고 서방세계의 인권문제 거론은 체제의 존립과 관련된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72) 위의 책, p. 87.

73) 김정일,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문헌집」, pp. 350~51.

## 2. 對應方式

### 가. 대외 인권공세

북한은 서방세계 및 남한의 대북한 인권문제 제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992년 평양에 ‘조선인권연구협회’(회장 이창하)라는 인권연구기관을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sup>74)</sup> 북한은 대외적 인권공세 차원에서 북한의 인권문제 부재를 거듭 천명하고 자본주의 국가들의 인권압력 의도를 비난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특히 탈냉전시대에 들어 북한은 과거와는 달리 북한의 고립된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전세계적인 비판여론의 예봉을 피하기 위해 국제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목소리를 높여 가고 있다.

북한은 인권문제와 관련된 국제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북한의 인권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1993년 6월 비엔나에서 개최된 세계인권회의에 북한대표로 참석한 백인준은 인권보호라는 미명하에 특정국가의 주권을 침해하는 내정간섭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며 북한에는 정부가 정치적 자유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잘 보호하여 국민들이 이를

74) 이러한 사실은 국제사면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다. 국제사면위원회, 「북한: 국제사면위원회의 우려」, p. 32.

흠뻑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인권문제는 없다고 주장하였다.<sup>75)</sup> 그는 “인권문제는 해당 국가가 자기 실정에 맞게 책임지고 보장해야 할 문제”이며 “진정한 인권의 보호증진은 외세의 압력이 아니라 매개 나라와 인민이 선택한 정치·경제제도와 법률 등에 의해 실현되며, 나라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야 된다는 주장이 오늘의 실정에 부합”된다고 강변하였다.

또한 북한 부주석 김병식은 1995년 3월 3일부터 12일까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UN 사회개발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김정일이 김일성의 대를 이어 인민들을 현명하게 영도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전체인민들은 식·의·주에 대한 물질적 조건을 국가로부터 보장받고 있고 화목한 대가정을 이루고 있다고 그들의 체제우월성을 강변하였다.<sup>76)</sup>

사회개발정상회담의 경우 세계 120여 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유엔 창설 이래 최대의 국제회의임과 동시에 회의 성격상 ‘개발권’을 내세워 서방국가들의 인권개선 압력 등을 희석시킬 수 있는 모임이기 때문에 북한체제선전의 중요한 기회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권문제가 김일성 사후 김정일 정권의 출범을 앞두고 국제사회에 확산된다면 투자는 물론 정치사회적 안정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 볼 때 북한은 앞으로도 기회

75) 통일원, 「월간 북한동향」, 제144호 (1993.6), pp. 57~58.

76) 통일원, 「월간 북한동향」, 제165호 (1995.3), pp. 90~91.



가 허용되는 대로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북한체제를 선전하는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언론매체를 통해 서방세계의 인권압력의 의도를 비난하고 나섰다. 1990년 초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제국주의자들, 특히 미제는 교활하게도 <인권존중이 미국의 기본적인 가치관>이니, <인권문제는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중추를 이루는 문제>이니 하면서 매해 <년례세계인권상황>이라는 허황한 문건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인권이 공개적으로 <유린>되는 지역들에서 저들의 <영향력>을 행사하겠다고 하는 이른바 <인권외교>에 대해서 요란히 떠벌이고 있다. 그런데 미제가 벌리고 있는 이런 <인권옹호>감빠니야는 본질에 있어서 사회주의를 말살하고 세계제패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모략책동에 불과하다.<sup>77)</sup>

김정일도 김일성 사후 처음 발표한 논문 “사회주의는 과학이다”에서 자본주의의 인권문제 제기 의도를 비난하였다. 김정일은 인권문제에 대해 “지금 제국주의자들은 다른 나라의 내정에 횡포하게 간섭하고 다른 나라 인민들의 자주권을 유린하면서 그것을 인권옹호의 구실밑에 정당화하려고 책동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sup>78)</sup>

77) 김창렬, “제국주의자들이 떠벌이고 있는 <인권옹호>와 그 반동적 본질,” pp. 94~95.

78) 「로동신문」, 1994.11.4.

이와 동시에 북한은 당기관지 및 담화 등을 통해 미국의 인권문제를 원색적으로 공격하는 중국식의 정면돌파 전략을 시도하였다. 북한과 미국간에 인권문제는 주요현안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이 미국의 인권실태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현대 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인 미국이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인권'을 대사회주의권 압력카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직접적인 공격을 가하고 있다.

북한은 95년 2월 8일 미국무부가 95년 2월 1일 발표한 연례인권보고서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한데 대해 “우리의 현실을 완전히 왜곡날조한 것으로 인권적 견지에서 논의할 한푼의 가치도 없다”고 비난하였다. 북한은 미국이 제기하는 인권문제에 대해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하려는 미국의 일부 불순계층들의 정치적 음모에 의해 조작된 것이며 대북 적대시 정책의 산물”이라고 주장하였다.<sup>79)</sup>

북한은 또한 미국의 인권침해 사례를 역으로 공격한다. 북한의 주장에 의하면 “미국은 국내에서도 인종차별·실업·살인·폭력 등과 같은 인권유린행위를 자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사력을 동원해 파나마 및 그라나다 침공, 쿠바여객기 폭파사건, 1985년 인도여객기 격추사건, 리비아 공격 등 세

---

79) 「내외통신」, 1995.2.9.

계도처에서 다른 나라들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그 나라의 인권을 황폐화시킨 것과 같은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sup>80)</sup> 북한은 「중앙방송」, 「평양방송」 등을 통해 미국이야말로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인권저지대이고 인간의 생존권이 항시적으로 위협받는 인생말살지대”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의 인권문제를 역선전하고 있다.<sup>81)</sup>

#### 나. 대남 인권공세

북한이 자신의 인권문제를 변호하는데 있어서 빠뜨리지 않는 것이 남한의 인권문제이다. 남한의 대북 인권문제 제기에 일종의 ‘맞불작전’으로 남한의 인권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북한은 남한에서의 인권탄압 행위가 미국의 비호와 묵인하에 감행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른바 문민정권의 허울을 쓴 남조선당국자들은 국가보안법을 포함한 각종 파쇼악법들을 휘둘러 자유와 민주주의적 권리, 생존권을 요구하는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을 마구 검거 투옥하고 고문 학살하고 있으

80) 「내외통신」, 1995.2.9; 안명혁, “미제는 최대의 인권유린자,” 「근로자」 (1990.8), p. 94.

81) 「내외통신」, 1995.2.10. 북한이 지적하는 미국의 인권문제는 인종차별, 선거제도, 빈부격차, 해외침략 등 4가지로 요약된다. 안명혁, 위의 책, pp. 91~96.

며 남조선 전역에는 어느 하루도 살벌한 폭압선풍이 잦은 날이 없다”고 비난한다.<sup>82)</sup> 반면 북한은 북한내 인권문제의 부재에 대한 증거로 “그 어떤 사회정치적 불안도 없으며 단 한 명의 실업자나 유랑결식자도 문맹자도 없고 마약중독자도 없다”고 강조한다.<sup>83)</sup>

북한은 1992년 「말」지 4월호에 출소 공산주의자 함세환·김인서씨에 대한 기사가 실린후 이들에 대한 송환을 요구하고 나섰으며 대남 인권공세의 주요 현안으로 삼고 있다. 북한은 93년 5월 27일 국제적십자총재 앞으로 이들의 송환요청 탄원서를 보냈으며, 이인모 북송 1주년이 되던 94년 3월 「남조선의 비전향장기수 구원대책 조선위원회」를 구성하고 출소 공산주의자들의 송환을 요구해 오고 있다. 이 위원회는 북한적십자사를 통해 대한적십자사에 몇 차례에 걸친 송환촉구 편지를 보내왔다. 북한은 94년 10월 18일 북한적십자사 창립 48주년 기념보고회에서 출소 공산주의자 송환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한 것을 시작으로 조국전선, 직총, 범민련 북측본부 등 각종 단체 명의의 「성명」과 「담화」를 발표하고 평양과 지방에서 군중집회를 여는 등 대남 인권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sup>84)</sup>

82) 「중앙방송」, 1995.2.8.

83) 위의 방송.

84) 구체적 사례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직총 성명(「중앙방송」,

한편 95년 1월 11일 이 위원회는 「통보」를 발표하고 출소 공산주의자 함세환, 김인서(일명 김국홍), 김영태의 송환을 위해 세계 인권단체들과 연대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sup>85)</sup> 북한이 현재 송환을 요구하고 있는 사람은 함세환, 김인서, 김영태 등 3명이다. 북한은 국제적십자위원회 앞으로 편지를 보내 이들의 송환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조총련 산하단체들을 대거 내세워 ‘미전향출옥수 송환촉구 모임’을 결성하거나 쫓기집회를 여는 등 해외에서의 선전공세를 펼치고 있다.

북한은 출소 공산주의자 송환문제를 집요하게 거론함으로써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여론을 희석시키고자 하며 당국간 대화중단의 책임을 남한에 전가하고 있다. 북·미관계의 개선조건으로 미국이 남북관계 개선을 요구하자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으로 남한내 출소

---

94.11.1), 농근맹 성명(「평양방송」, 11.4), 사로청 성명(「중앙방송」, 11.7), 「송환추진위」에 보낸 김영태 아들의 편지(「중앙방송」, 11.8), 이인모가 김영태에게 보낸 편지(「평양방송」, 11.10), 북적 이성호 위원장 대리가 국제 적십자위원장에게 김영태 송환요청 편지 발송(「평양방송」, 11.10), 비전향장기수 송환촉구 평양시 군중집회(「중앙방송」, 11.15), 평양시 청년학생 집회(「평양방송」, 11.18), 평양시 여성집회(「중앙방송」, 11.23), 신의주시, 평성시 군중집회(「평양방송」, 11.25), 해주시 군중집회(11.26).

85) 통일원, 「주간 북한동향」, 95.1.19.

공산주의자의 송환문제를 주장해 왔다. 북한은 출소 공산주의자 송환문제를 북한의 인권문제를 희석시키고 인권압력을 피하는 중요한 카드로 사용하고 있다.

#### 다. 부분적 수용 및 유연한 대응

북한은 1992년 평양에 「조선인권연구협회」(서기장 이창하)를 창설하고 서방세계의 대북한 인권문제 제기에 대해 보다 유연하고 논리적이며 체계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북한은 94년 8월 2일 「조선인권연구협회」를 통해 국제사면위원회가 94년 7월 30일 제기한 승호리수용소에 대해 ‘허위모략’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고상문(94.8.10)과 유성근(94.8.11)으로 하여금 각각 기자회견을 갖게하고 이들의 ‘자진입북’을 선전하였으며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비난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하였다. 또한 94년 8월 17일 납북자 7명의 합동 내외신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으며, 94년 9월 1일에는 ‘의거입북자’ 허종만 환영 평양시 군중집회를 개최하는 등 국제사회의 여론을 의식한 대응조치들을 취하였다. 이는 부정과 거부 일변도로 치달았던 과거 북한의 행태와는 달리 탈냉전시대의 고립된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 외부세계가 이해할 수 있는 국제규범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또 경제적으로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를 중심

으로 외국투자를 유치함으로써 북한이 개방의 문을 열고 있고 외부세계에 협조적인 것처럼 선전한다. 외국 투자유치 정책은 김일성이 사망하기 전에 지시했던 것으로 보이며 북한의 정무원 부총리 홍성남도 “우리는 외국투자를 환영한다. 그것이 김동지의 뜻이기도 했다”고 말했다.<sup>86)</sup> 한국전쟁 이후 대북한 금수를 철저히 이행해 왔던 미국도 무역금지조치를 일부 완화했다. 아직까지 착공한 공사는 한 건도 없지만 지난해 10월 이후 아메리칸 항공, 코카콜라, 제너럴모터스 등 수십개의 미국기업들이 나진·선봉지역을 방문했다. 이러한 경제개방의 유화조치는 인권부재라는 북한의 이미지를 개선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강제노동 수용소를 재조정함으로써 국제 인권단체들의 인권문제 제기에 대해 대응하고 있으며 양심수들을 분리·관리하는 정책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95년 4월말 「평양축전」 기간에는 AI를 초청하여 북한 인권실태에 관한 현장조사를 부분적으로 허용하였다. AI보고에 의하면 북한은 12개의 수용소를 최근 3~4개로 축소한 것으로 추측된다. 북한은 평양에 반국가행위자들을 수용하는 수용소를 포함하여 3개의 수용소 시설이 있음을 시인하였다.<sup>87)</sup> 이는 지

86) *Asiaweek*, 1995.5.12; 「평양축전 참관자들을 통해서 본 북한의 실상」(서울: 북한문제연구소, 1995), p. 191에서 재인용.

87) AI 방북보고 내용, “Amnesty International Delegation Visits North

금까지 수용소 탈주자와 기타 탈북자들을 통해 12개로 알려진 수용소 시설을 이전 또는 폐쇄하고 현재 3개의 수용소만을 관리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 북한은 방북한 AI 대표단에게 앞으로 국제인권규약에 따라 정부보고서를 제출하고 형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같이 북한은 대외적으로 자신들의 인권문제가 부재함을 천명하고 미국 등 자본주의권의 인권문제를 반사적으로 공격하는 한편, 인권문제의 화살을 남한으로 돌려 남한의 인권문제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동시에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인권개선 요구에 대해 부분적으로 수용 또는 대응하는 유연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

Korea, Discusses Legal Reforms and Prisoner Cases,” (95.5.11); 「세계일보」, 1995.5.17; 「조선일보」, 1995.5.26.



## 第 V 章 金正日 政權의 人權政策 變化 展望

### 1. 對內政策 變化 展望

김정일 정권의 대내 인권정책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추진 될 것인가를 분석하기 위해 인권개념을 제2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정치적·시민적 권리의 측면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측면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 가. 정치적·시민적 인권통제 강화

북한은 많은 제3세계 국가들처럼 자결권과 발전권을 명분으로 들어 서구식의 정치적·시민적 권리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인권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측면에서 인권이 보장되어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으며, 정치적·시민적 권리는 ‘집단주의’와 ‘인덕정치’로 보호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북한은 외부세계가 북한의 정치적·시민적 권리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기본적 권리에 관한 구체적인 법제화를 단행하고 있다. 북한은 72년 사회주의 헌법에서 법에 의한 국민의 ‘체포’만을 규정하였으나 92년의 개정헌법은 ‘구

속'을 추가하였으며 '살림집 수색'을 부가하였다(제78조). 따라서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원칙적으로 국민의 구속, 체포, 살림집 수색이 금지되도록 규정하였다. 북한은 그동안 위생 검열이라는 명분으로 사회안전부 요원과 인민반장 등이 주·야간에 가택조사를 실시해 왔다. 또한 각종 사회통제 조직에 의해 사생활과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관행은 주민들의 불만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제도적인 변화가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규정을 헌법에 구체화한 것은 인신의 보장과 주택의 불가침 보장을 좀더 강화함으로써 사회통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서구사회로 하여금 대북한 인권문제 거론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한 조치라고 해석할 수 있다.<sup>88)</sup>

또한 92년 1월 15일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형사소송절차에 있어 인권보장을 선언하고(제1조),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에 의해 형사사건을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적법절차에 의한 수사 및 증거재판주의를 채택(제35조, 제36조)하였다. 동시에 인신구속 등 강제처분에 신중성을 강조(제11조)하는 등 이전의 법에서보다 인권보장 측면에서 외형상 진일보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제4조는 “국가는 형사사건 취급처리 활동에서 인권을 철저히 보장한다”라고 규정하였다.

88) 김동한, “북한 헌법상의 기본권 조항 변천에 관한 고찰,” 『북한연구』, 제6권 제2호 (1995 여름), p. 41.

뿐만 아니라 94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7차회의에서 ‘변호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는데, 여기에서 북한은 변호사의 주요임무로서 인권보장을 강조하였다. 개정 변호사법 제2조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변호사는 변호활동과 법률상 방조를 통하여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법률제도를 옹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89)</sup> 1948년에 제정된 변호사법에는 “변호사는 노동자, 농민계급 이익의 대변자”라고 규정하였으나, 개정 변호사법에서는 정치사상적 요소를 완화하고 인권보장을 강조하였다. 또한 제23조에 “다른 나라 변호사에 호상성의 원칙에서 공화국 변호사 자격을 줄 수 있다”고 규정하여 외국변호사가 북한의 변호사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러한 변화추세는 95년 6월 19일 김정일이 발표한 논문 “사상사업을 앞세우는 것은 사회주의 위업 수행의 필수적 요구”에 명백히 나타나 있다. 김정일은 개방·개혁을 앞두고 제반 법규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제국주의의 문화적 침투를 차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과 법을 통해 주민을 통제해 나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국가기관들은 사회주의적 법규범과 규정들을 잘 만들고 모든 분

---

89) 법원행정처, 「북한의 새로운 변호사제도」(서울: 법원행정처, 1995.7), p. 147.

야에서 사회주의적 관리질서를 정연하게 세우며 인민들이 법규범과 관리질서를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지도 통제하여야 한다.<sup>90)</sup>

이는 주민통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통제를 ‘합법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는 김정일 정권의 인식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상교육을 더욱 강화하도록 지시를 내리고 정치사상분야에서 약간의 통제 이완도 허용치 않을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김정일은 “학습과 조직생활을 통하여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시키는 사상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학습과 조직생활 혁명실천은 사상교양 사업의 중요한 고리이며 위력한 방도이다....오늘 우리나라에서는 전당, 전민, 전국이 학습하는 정연한 체계를 세우고 정상적으로 배우고 있으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정기학습과 강연회를 비롯한 집체학습에 빠짐없이 참가하여 성실히 배우고 있다....우리는 전당과 온 사회의 혁명적 학습기풍을 더욱 철저히 세우고 모든 사람들이 꾸준히 학습하도록 하여야 한다.<sup>91)</sup>

사상교양과 단속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당조직과 근로자 단체들은 물론 특히 청소년들에 대한 사상교양을 충실히 해나

90) 김정일, “사상사업을 앞세우는 것은 사회주의 위업 수행의 필수적 요구,” 「조선중앙방송」, 1995.6.20.

91) 위의 글.

가야 한다고 지시하였다.

이와 같은 북한의 법률제정은 북한주민들의 인권이 법률로 보호되고 있음을 대내외적으로 선전하는데 이용되고 있는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동시에 현실적인 요구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즉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신설 등 대외개방의 불가피한 추세를 예상하고 개방화에 대비한 구체적인 법제정이 필요한 것이다. 기존의 폐쇄된 사회에서는 구체적인 법률조항이 없더라도 사회주의적 혁명성과 주체사상의 이념성에 근거한 사회적 관례를 따라 주민들을 통제하고 관리해 왔다. 개방화가 가속화될 미래를 대비하여 북한주민들의 정치적·시민적 권리에 대해 법률적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자본주의적’ 인권신장 요구를 사전에 차단하고 개방화에 대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국기업인들과 상사주재원들의 활동범위도 법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은 구체적인 현실적인 법제화를 통해 주민들의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강력히 통제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인권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 나. 경제·사회·문화적 자유 확대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인권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경

제적·사회적·문화적 측면에서 인권이 보장되어 있다고 주장해 왔다. 북한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여러 가지 변화정책을 취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인권이 보장되고 있음을 선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 (1) 사적 경제활동의 활성화

북한은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경제생활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1970년대 후반부터 경제가 침체됨으로써 주민들의 경제생활이 매우 열악해졌다. 김정일은 경제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중공업 위주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경공업 및 생활소비품 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해 1984년 2월 김정일의 대국민 정치활동 개시와 함께 사적 경제활동을 허용하는 제도적 조치를 마련하였다. ‘경공업 혁명’을 기치로 내걸고 1984년 8월 대대적인 ‘8·3인민소비품 증산운동’을 전개하고 터밭과 ‘장마당’을 활성화하는 등 주민개개인의 물질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장치를 제도화하였다.

김정일은 공장에서 나오는 부산물과 자체조달한 원자재를 이용하여 주민들이 일상생활용품을 생산하여 판매할 수 있는 개인부업을 허용한 것이다. 이를 위해 도시의 구역과 읍, 농촌의 군단위에 각각 1개씩 200여 개 이상의 ‘직매점’을 설치하였다. 그 결과 생활필수품과 소비재의 생산을 위한 소규

모 공장과 기업소가 곳곳에 속출하였고 1985년 한 해만도 개인부업 형태의 공장과 작업반이 1만 4천 4백여 개가 생겨날 정도<sup>92)</sup>였으며, 해마다 공장과 작업반이 1천 5백개 이상씩 늘어났다.<sup>93)</sup> 생산을 위한 별도의 작업반 이외에 인민반 단위로도 가내작업반이 결성되었고 여기에서 옷, 양말, 신발, 학용품, 가재도구 등의 제품들을 생산하여 직매점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8·3인민소비품 생산기업체는 생산과 분배, 노동정책, 가격 결정 등에서 간섭을 받지 않거나 부분적인 간섭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계획경제·통제경제의 제도권으로부터 비교적 자율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이 분야의 생산규모가 확대되자 북한은 8·3인민소비품 생산체계를 재조정하여 국가계획으로 통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8·3인민소비품 생산기업체의 허용은 주민들에게 경제생활의 자유를 제한적이나마 제도화함으로써 주민들의 경제적 권리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또한 계획경제의 비효율성을 시정하기 위해 터발이용과 농민시장을 활성화함으로써 수요공급의 자본주의적 형태를 부

92) H. S. Lee, "North Korea's Closed Economy: The Hidden Opening," *Asian Survey*, vol. 28, no. 12 (December 1988), p. 1268.

93)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9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1), p. 176.

분적으로 인정해 왔다. 농민시장에서 가격은 국정소매가격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이긴 하지만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된다.<sup>94)</sup> 농민시장은 1개군 단위에 1~2개소를 지정하고 월3회의 장마당 서는 날(1일, 11일, 21일)에 채소류와 가내수공업제품을 유통·판매하고 있다.

경제운영에 있어서도 기존의 생산기업체에 한정했던 독립채산제를 1992년부터 경제·문화 등 전사회적 범위에서 적용함으로써 운영방식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sup>95)</sup> 농업부문에 서도 협동적 소유를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함으로써 이념적으로 국유화를 지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농업을 기업적 방법으로 운영하고 보수에 있어서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농업연합기업소의 형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독립채산제와 농업연합기업소는 제한적 의미에서 ‘자본주의적 방식’을 이미 도입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

최근에는 식량난이 가중되자 식량을 구하기 위한 주민들의 이동과 여행을 부분적으로 완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정치적·경제적 이유에서 주민들의 타지방 여행을 제한해 왔으며 여행증을 소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식량난

94) 사회과학원, 「경제사전」, 제1권 (평양: 사회과학원 출판사, 1985), p. 78.

95) 조명철, “북한경제의 실태 및 운용,” 민족통일연구원 간담회, 1995.8.17.



의 악화로 식량배급에 차질이 발생하여 주민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 타지방 친척들을 방문하는 경우가 잦아졌고 식량을 구하기 위한 여행은 심한 단속을 하지 않고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말과 5월 초 평양을 다녀온 방문객들은 평양시내에서도 식량 보따리를 짊어지고 다니는 광경을 쉽게 목격했으며, 중국으로부터 도착한 열차에서도 식량을 들고 가는 승객들을 많이 발견했다고 언급하였다.

이처럼 김정일 정권은 주민들의 경제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변화와 각종 완화조치를 취함으로써 주민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김정일 정권은 경제부문에서 제한적이거나 주민들에게 사적 활동영역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 (2) 차별적 성분정책의 완화

성분정책은 전주민에 대해 가족의 계급적 배경과 사회적 활동 등을 기준으로 정치성향을 파악하고 보안등급을 매김으로써 주민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통제하기 위해 북한이 시도한 사회주의적 계급정책이다. 북한은 1958.12~60.1에 '중앙당집중지도사업,' 1966년부터 1년여 걸친 주민재등록사업, 67~70.6에 걸쳐 조사한 '3계층 51개부류 구분사업,' 80년대

들어서 ‘외국귀화인 및 월북자에 대한 요해사업’(80.4~80.10)과 북송교포에 대한 요해사업(81.1~4)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전체주민들을 핵심계층, 기본계층, 포섭계층으로 분류하고 의식주 배급 및 사회적 혜택을 차별적으로 배분하는 계급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가장 심각했던 시기는 소위 ‘3계층 51개부류 구분사업’을 실시한 1967~70년의 기간이었다고 전해진다. 김일성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시도한 기간으로 중국의 ‘문화혁명’시기와 비슷한 숙청과 탄압이 자행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김정일이 당에 등장하여 권력기반을 구축한 73~76년에도 사회적으로 매우 긴장되었고 인권탄압이 심했다고 한다.

이러한 경직된 성분정책은 주민들의 불만과 노동의욕상실 등 사회문제에 부딪혀 김정일은 1980년대 중반 성분완화시책을 하달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과거의 경직된 성분정책에서 탈피하여 현재의 사상을 중심으로 사람을 평가해야 한다는 내용의 영화 「보증」을 1987년에 제작·상영하였다.<sup>96)</sup> 이 영화는 김정일의 성분완화 정책을 홍보한 대표적인 영화로

96) 이 영화는 남한에 가족을 둔 한 노동자가 성분문제로 작업현장에서 각종 불이익을 겪고 사회적·심리적 고통을 당하는 작업현장을 소개하고 이러한 부조리를 시정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1980년대 중반 이에 관한 김정일의 교시가 있었음을 보여준다.<sup>97)</sup>

「로동신문」은 1993년 1월부터 ‘인덕정치’와 ‘광폭정치’를 강조하고 나섰다. 이는 김정일이 과거의 계급적 성분에 의한 정치를 탈피하고 사랑과 믿음에 기초한 새로운 군중노선을 통치이념으로 삼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로동신문」은 광폭정치에 대해 “기본군중 뿐만 아니라 가정주위환경과 사회정치 생활경위가 복잡한 군중도 혁명의 영원한 동행자로 보고 따 뜻이 손잡아 이끌어주는 정치”라고 정의하였다.<sup>98)</sup> 즉 인민을 위한 정치는 그릇이 커야 하며 그릇이 크지 못하면 대중을 다 담아내지 못하며 대중이 정치를 외면되기 때문에 전체인 민을 정치의 주인으로 대우하기 위해서는 정치의 폭이 넓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정일은 94년 11월 「로동신문」을 통해 발표한 “사회주의는 과학이다”에서 과거의 입장을 반복한 가운데 지금까지 탄압의 대상이었던 포섭계층에 대한 태도를 누그러뜨릴 필요성을 지적하는 내용을 발표하여 이와 같은 성분완화정책에 대해 시사해 주고 있다. 김정일은 “우리 당의 인덕정치는 각

---

97) 김정일의 성분정책에 대한 새로운 지침이 내려진 시기는 정확히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귀순자들의 증언을 종합해 보더라도 1980년대 중반인 것으로 보인다.

98) 「로동신문」, 1993.1.28.

계각층의 인민들에게 차별없이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는 폭넓은 사랑과 믿음의 정치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당의 인덕정치를 광폭정치라고 한다”고 말하였다.<sup>99)</sup> 나아가 “우리당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버리지 않고 교양개조하여 옳은 길로 이끌어주어 사회정치적 생명을 끝까지 빛내어 나가도록 보살피주고 있다”라고 주장하였다.<sup>100)</sup>

인민대중의 성원 여부를 계급적 토대뿐만 아니라 현재의 사상과 행동양식에 따라 평가한다는 점을 강조한 ‘인덕정치’는 김정일의 논문이 발표된 직후 「김정일 혁명역사 강좌」를 통해 구체적으로 강조되었다.<sup>101)</sup> 북한은 김정일이 일찌기 당과 주민간의 일체감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의 사상을 중심으로 사람을 평가해야 한다는 지침 아래 복잡군중을 포섭해 왔다고 말하고 복잡군중도 사상교양에 의해 개조되면 핵심군중이나 기본군중처럼 혁명의 동반자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99) 「로동신문」, 1994.11.4.

100) 김정일은 이 논문에서 주체 및 주체사상이라는 용어보다도 사랑과 믿음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였다. ‘주체’라는 단어는 18번, ‘주체사상’이란 단어는 9번 사용된데 비해, ‘사랑’은 38번, ‘믿음’은 27번, ‘인덕정치’는 14번 사용하였다. 사랑, 믿음, 인덕정치라는 용어들이 주체, 주체사상이란 단어들보다 3배나 더 자주 쓰여졌다. 백응진, “김정일 비서의 논문 「사회주의는 과학이다」에 관한 평가,” 「통일한국」 (1995.7), p. 81.

101) 「평양방송」, 1994.11.5.

### (3) 종교시설 건축 허용

1992년 신헌법에서는 1972년 헌법에서 신앙의 자유와 함께 허용되었던 반종교선전의 자유와 권리를 삭제하였다. 대신 “누구든지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 수 없다”고 못박으면서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제68조)한다고 하였다. 이는 북한정부의 자의적 필요에 따라 남한이나 외국의 종교인의 방북과 그들의 종교의식 거행을 허용하기 위한 선전적이고 상징적 차원에서 신앙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종교의 이와 같은 정치적 입장은 1970년대 후반에 이미 발전된 것이다.

오늘 남조선에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 유교, 천도교를 비롯하여 120여종의 교파와 5만 3천여명의 교직자, 1,795만여명의 신도가 있다. 신도의 대부분은 각성되지 못한 근로인민들이며 상층 종교계인사들 가운데는 하층 신도들과 함께 현 군사 파쇼통치를 반대하여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민족애의 정신을 넣어주고 점차 이에 계급교양, 정치선전을 배합한다면 능히 그들을 각성시키고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의 대오에 들어서게 할 수 있으며, 혁명투쟁에서 그들을 적극적 작용을 높여 혁명역량을 확대 강화할 수 있다.<sup>102)</sup>

102) 허종호,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 이론」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6), p. 114.

1992년의 개정헌법은 신앙의 자유를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고 하여 “공민은 신앙 및 종교의식 거행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한 1948년 헌법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sup>103)</sup> 1972년 사회주의 헌법에서 ‘반종교선전’의 자유가 첨가되어 종교의 자유가 제한되었다가 ‘반종교의 선전과 자유’가 삭제되고 ‘종교의식의 허용’을 첨가한 것은 신앙의 자유권이 형식적인 측면에서나마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48년 헌법에서는 종교탄압이나 무시정책이 제체도에 진입하지 못한 결과의 규정이었다면 1992년 개정헌법에서는 종교를 형식적이거나 허용할 수 밖에 없는 변화된 시대상황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sup>104)</sup> 이는 종교를 부정하던 북한이 개혁·개방의 국제정세 변화 속에서 불가피하게 신앙의 자유를 제한적이거나 허용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 준다.

103) 1948년 이전 임시헌법 초안에서는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종교단체는 그 종교적 사업과 의식거행을 자유로 할 수 있다. 교회 및 종교를 정치적 목적에 악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1992년 개정헌법과 가장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

104) 김동한, “북한 헌법상의 기본권 조항 변천에 관한 고찰,” p. 40. 1948년 헌법은 “공민은 신앙 및 종교의식 거행의 자유를 가진다”(제14조) 라고 규정하였고, 1972년 헌법은 “공민은 신앙의 자유와 반종교선전의 자유를 가진다”(제54조)라고 규정하였다.

#### (4) 문화생활권 확대

북한은 외화의 부족 때문에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고 있으며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필요한 문화·오락시설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 때문에 문화생활권은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평양은 이미 일부 외국인과 당간부를 위해 골프장, 가라오케, 유료택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바둑을 비롯해 야구, 소프트볼, 볼링, 프로권투 등의 ‘자본주의적’ 스포츠를 도입하는 등 주민들의 문화공간을 확대함으로써 정치·시민적 통제에 대한 불만을 상쇄시키고자 하고 있다.

북한은 또한 50년대, 60년대에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회갑, 장례, 제사 등의 전통적인 풍습과 추석, 설, 단오 등 민속명절을 사회주의 생활양식과 어긋난다는 이유로 배격해 왔다. 그러나 1970년대 들어 회갑, 제사 등 전통적 풍습을 허용하기 시작했으며 추석에는 인근 조상묘소에 성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그러다가 1988년에 추석을 휴무일로 정한 것을 계기로 전통문화의 복원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1989년에는 음력설과 단오를 휴무일로 지정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전통명절을 기념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다.<sup>105)</sup>

105) 추석 때는 귀성인파가 늘어나 귀성객들에게 버스와 열차에 대한 특별교통편을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평양신문」, 1992.9.11.

의생활면에 있어서도 86년 2월 ‘주민복장규정’이 하달되어 여성들의 치마 착용과 화려한 색상의 옷차림을 장려하였으며, 89년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을 계기로 급속히 확산되었다. 1992년 정무원 경공업위원회 산하 피복연구소에서는 패션화보 「옷차림」을 출간하였고, 같은 해 원산에서는 ‘새로운 옷형태의 창안을 위한 기술혁신 현상모집’이라는 패션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의생활 면에서도 다양성을 허용하고 있다.<sup>106)</sup>

한편 북한은 프로스포츠를 허용함으로써 기존의 이념지향적 문화구조에 변화를 주고 있다. 권투의 경우 1992년 ‘프로권투협회’가 결성되어 프로권투경기를 추진해 왔으며, 93년 4월에는 ‘93공화국 프로권투선수권대회’를 개최하는 등 프로스포츠화를 모색하고 있다. 90년부터 시작된 ‘평양컵 국제축구대회’도 3만 5천 달러의 상금을 걸고 개최해오고 있다.<sup>107)</sup> 부르주아적 스포츠로 규정하고 금기시했던 볼링도 허용하였으며 95년 2월 25일에는 ‘제1회 평양볼링경기대회’가 열렸다.

95년 4월 말 평양에서 개최된 ‘평화를 위한 국제체육 및 문화축전’에 북한역사상 처음으로 프로레슬링 경기가 허용되었다. 미국, 일본, 멕시코에서 참가한 26명의 프로레슬러들이

106) 내외통신사, 「북한조감」 (서울: 내외통신사, 1994), pp. 112~13.

107) 「내외통신」, 주간판 제947호, 1995.4.6.



여자경기 2게임을 포함하여 16차례의 시합을 펼쳤다.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가수들의 팝송이 공연됨으로써 문화적 공간이 확대되었다. 물론 이러한 문화생활권의 확대가 북한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수혜로 돌아가거나 인권신장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고 볼 수 없지만, 이는 적어도 문화적 측면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문화적 권리를 허용하는 조치를 수반하게 마련이다.

김정일 정권의 출범과 함께 가장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가 바로 주민들에 대한 문화적 공간확대가 아닌가 싶다. 김일성 시대의 혁명과 투쟁의 병영문화로 억눌린 정서를 ‘인덕정치’로 포용하기 위해서 김정일은 주민들에게 휴식문화와 여가생활을 확대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프로스포츠화 및 문화시설의 확대는 김정일 정권의 등장과 관련하여 북한의 폐쇄적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외화획득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엄격한 통제로부터 파생된 북한주민들의 불만과 우려를 해소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문화생활권 확대는 김일성 사망 이후 김정일 정권의 사회통합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최근 허용한 문화적 조치로 인해 북한주민들에게 엄청난 ‘문화충격’의 파급효과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개혁·개방을 대비하여 선별적이고 제

한적이거나 문화적 생활권을 넓혀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 기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김정일 정권은 대내 인권정책에 있어서 사상교육의 강화를 통해 사회주의 법무생활과 집단주의 원칙을 강조하고 그에 따른 법제화를 통해 정치적·시민적 인권을 강력히 통제하고 처벌을 강화해 나갈 가능성이 크다. 동시에 경제·사회·문화적 인권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자유를 확대함으로써 대외 인권압력에 대처하고 대내 사회통합도 도모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 2. 對西方 人權 對應政策 展望

### 가. '우리식' 인권정책 선전 강화

북한은 대내적으로 정치적·시민적 통제를 강화하고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통제를 조심스럽게 완화해가는 한편, 서방세계의 정치적 권리 신장 요구에 관해서는 '우리식 인권'을 주장하며 내정불간섭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두 가지 관점에서 북한식 인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첫째는 제3세계의 개발권 논리이다. 북한은 지난 93년 6월 비엔나 제2차 세계인권회의에서 강조된 '개발권' 논리를 바탕으로 서방세계가 인권문제를 거론하는데 대처하고 있다. 제3세계가

주장하는 개발권의 요지는 경제발전 없이는 인권보장이 어려운데다 인권문제는 주권사항으로 외세의 간섭이 용인되지 않는 분야인 만큼 정치적, 시민적 인권을 누리기에 앞서 국민을 먹여 살리는 것이 더 큰 인권존중이라는 것이다. 북한은 물론 경제적으로 인권이 보장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개발권을 내세움으로써 서방세계의 개도국에 대한 인권 압력 행사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정치적 목적에서 개발권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는 정치문화의 상대주의적 관점이다. 북한은 동남아와 아프리카 등 제3세계 국가들에서 널리 주장되고 있는 인권 개념에 근거하여 ‘북한식’ 인권정책을 선전하고 있다. 최근 구사회주의 국가의 정치적 변화와 관련하여 민주주의보다는 권위주의로의 과도기적 단계가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신권위주의 이론과 싱가포르를 모델로한 아시아적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거론됨으로써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한 인권문제 제기가 다소 주춤하는 경향을 보이는 측면도 있다.<sup>108)</sup>

이와 같이 북한은 많은 제3세계 국가들처럼 발전권과 자결권을 명분으로 들어 서구식의 정치적·시민적 권리에 대해서는 강력히 부정한다. 정치적·시민적 권리는 북한식의 ‘집단주의’와 ‘인덕정치’로 보호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108) Melanie Chew, "Human Rights in Singapore," *Asian Survey*, vol. 34, no. 11 (November 1994), pp. 933~48.

북한은 최근 로동신문에 “참다운 인권을 옹호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우리식 인권’이라는 어휘를 사용하며 북한식 인권개념을 주장하고 나섰다.<sup>109)</sup> 북한은 “제국주의자들이 인권에 이중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제국주의자들의 인권옹호책동은 다른 나라의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하고 타민족의 운명을 농락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제국주의자들은 간섭과 압력에 불응하는 나라들에 대해 인권이라는 울가미를 씌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또 “우리는 인권에 있어서 계급성을 숨기지 않으며 사회주의 인권은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적대분자들과 인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불순분자들에게까지 자유와 권리를 주는 초계급적인 인권이 아니다”고 규정했다. 북한은 정치범을 지칭하는 반혁명분자들을 “철두철미 인간의 이익을 배반한 반역자 매국노이자 인간쓰레기”라고 공격함으로써 이들의 인권은 존중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밝혔다. 북한이 얘기하는 ‘우리식 인권’이란 “자기 당과 영도자를 충성으로 받들고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데 최상의 삶의 권리와 참된 인권이 있다”며 “소수의 계급적 원썬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이 우리식 인권”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미국이 대북한 인권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게 되

109) 「로동신문」, 1995.6.24.

면 우선 정치적 주권침해라고 반격을 가할 것이며 반사적으로 미국의 인권유린실태를 공격할 것이다. 동시에 북한은 소위 '우리식 인권'을 정당화시키는 가운데 미국식 가치관에 기초한 인권개념, 즉 서방식 인권론을 배격하고, 인권문제는 해당국가의 실정에 맞게 독자적으로 보장할 문제라고 주장해 나갈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인권의 보편성을 반대하고 '인덕정치'하에서는 인권침해가 없다는 내용의 선전공세를 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 나. 유화정책을 통한 인권외교 강화

북한은 북한식 인권개념을 대외적으로 주장함과 동시에 대서방 유화책으로 인권단체의 요구들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특히 「조선인권연구협회」를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세련된 대응책을 강구함으로써 기존의 강경 일변도의 인권억압적 이미지로부터 탈피하여 유연한 대응정책을 모색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북·일수교를 앞두고 북송일본인처 문제가 현안으로 부상하자 북한은 북송교포들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이들이 북한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유화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송일본인처를 비롯한 북한의 인권유린실태는 방북 일본인을 통해서 국제사회에 폭로되었고, 북송일본인

처의 일본방문을 허용하라는 일본측의 압력을 받아 왔다. 북한은 한 북송교포의 체험담을 보도하면서 북송교포들이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할 너무나 분에 넘치고 아름다운 행복을 누리고 있다”고 강조하였다.<sup>110)</sup> 북한이 북송교포들에 대해 이와 같이 생활상을 보도하는 것은 최근 북한탈출 북송교포들의 증언을 통해 밝혀지고 있는 북송교포들의 어려운 생활상태를 호도하기 위한 것으로써 ‘조총련’ 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반북여론을 무마하고 북·일수교회담에서 ‘재북일본인처’ 문제가 거론될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인권정책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역시 미국의 대북한 인권압력일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에 경수로 건설을 지원함으로써 북한의 핵동결을 지속시키고자 하고 있어 인권문제를 전면에 내세우기는 힘들게 되었다. 1994년 12월 17일 미군헬기의 북한지역 불시착 사건과 관련하여 북·미간에 협상이 진행되면서 북한은 미국의 대북 인권압력정책을 포기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생존조종사 송환을 위해 방북(94.12.28~30)한 허바드 미국무부 차관보는 북한관계자들과 회담을 갖고 「양해문」 발표를 통해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출소 공산주의자 송환 배려를 약속함으로써 미국은 공식외교채널을 통한 인권압력은 행사하기 어려

110) 「평양방송」, 1995.6.20.

워졌다.<sup>111)</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세계인권개선을 주요 외교목표의 하나로 설정하고 모든 나라에 대해 예외없이 인권보호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압력을 꾸준히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나진·선봉 특구개발과 관련한 북한의 대외개방 조치들은 인권부재라는 억압적인 북한의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경제개방에 필요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미국 등 자본주의 국가와 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정치적 억압체제와 인권유린실태를 외부로부터 은폐하고 정치적 압박(인권 압력)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제한적인 경제개방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현재 내부적으로 체제에 저항하거나 인권개선을 요구하는 집단 혹은 조직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회 내부로부터 직접적인 압력은 받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북한은 중국의 경우와 유사하게 서방국가들의 대북한 인권문제

111) 통일원, 「주간 북한동향」, 1995.1.5. 북미간 합의된 양해문의 내용은 ① 사그미군헬기의 불법영공침입 인정, ② 사건 재발 방지대책 강구, ③ 한반도 평화와 안전의 위협요인을 막기 위한 북·미 군사접촉 유지, ④ 출소 공산주의자 송환 배려 등이다.

제기에 대해 처음에는 무조건 부인 또는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다가 점차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유연한 대응방법을 강구해 왔으며, 최근에는 ‘우리식’ 인권개념을 주장하면서 서방세계의 인권압력 개선에 대해 정치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따라서 김정일 정권의 인권정책은 대외적 압력을 벗어나기 위한 ‘우리식 인권개념’과 대외 유화정책을 강조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우리식 인권’의 목소리를 한층 높일 것이며 대미·대일 유화정책으로 자신들의 인권외교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 第 VI 章 北韓 人權政策 變化를 위한 南韓의 政策方向

### 1. 基本 方向

북한의 인권정책을 변화시키고 북한의 대남 인권공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남한은 어떤 전략과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인가? 사회주의권 인권정책의 변화패턴을 분석·유추해 보면 대북한 인권정책을 수립하는데 몇 가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사회주의권의 인권정책 변화는 외부로부터의 폭로나 문제제기 및 압력이 없이는 불가능하였으며, 외부의 영향력 행사는 다음의 두 가지 조건에 의해 촉진되기도 하고 억제되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하나는 지역안보체제나 국제기구 등에 얼마나 깊이 참여하고 있는가 하는 정치외교적 대외의존성 정도이며, 다른 하나는 국내의 정치사회적 이질집단 혹은 갈등집단의 형성여부이다. 다시 말하면 국제기구나 지역안보체제에 밀접히 관련되어 있고, 사회내부에 현저한 이질적 집단이 존재했을 때 그 국가의 인권정책은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볼 때 남한의 대북 인권정책은 북한이 가입하고 있는 국제기구와 북·미, 북·일 관계채널을 통한 외적 압력을 강구하되 북한 내의 이질적 사회집단의 인

권문제를 연계하여 거론함으로써 인권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향으로 기본구도를 설정하고 세부적인 대북 인권정책방안을 수립·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북한이 가입 또는 협력하고 있는 유엔 및 국제단체와 같은 국제기구들을 활용하여 포괄적 대북 인권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북한은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정치·군사적 고립이 가속화됨으로써 자본주의권의 국제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북한은 그들이 즐겨 사용하는 단호한 부정과 거센 항의에도 불구하고 인권관련 국제기구들의 대북한 인권유린 실태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미국무부의 인권보고서와 국제인권단체들의 인권보고 내용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강한 어조로 부인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유화정책을 펴 나감으로써 이들과 우호관계를 유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도 인권문제에 대한 북한의 정치적 부담을 반영하는 것이다.

북한은 또 우리식 사회주의 체제의 특수성을 내세워 인권의 보편성을 반대하고 있지만 이미 유엔 가입국이며 국제인권규약에도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회원국의 의무와 인권규약을 준수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국제기구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인권문제를 거론하고 개선시켜 나가는 것은 구속력있고 현실성있는 방법이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UN과 국제민간기구를 통해 국제여론을 환기시키고 국제사회가 관심을 표명함으로써 북한의 정책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통해 대북정책도 세계화시대에 맞는 영향력있는 정책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같은 맥락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북·미, 북·일수교와 연계시키고 미국, 일본과의 협력체제를 강화하여 미국과 일본을 통해 자국의 인권관련 문제를 거론함으로써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정책 변화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어디까지나 미국과 일본으로 하여금 북한 내에서 자국시민의 보호라는 차원에서 인권문제를 거론토록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북한은 현재 군사외교적 고립과 경제난 해결을 위해 대미, 대일 관계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과 일본은 북한에서 자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보장을 요구하며 북한이 이에 협조함으로써 전반적인 인권정책의 변화를 가져오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셋째, 북한 내의 이질적 사회집단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남북한간의 인권협상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현단계에서 남한은 미국과 일본으로 하여금 각국의 인권관련 현안문제를 거론토록 하며, 남북한간에는 북한이 요구하는 출소 공산주의자 송환에 대해 남북자 송환과 이산가족상봉 문제를 의제로 삼아 정치적 협상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동서독의 경우 정치범 석방과 이산가족 재상봉 추진을 위한 ‘비밀거래’를 꾸준히 추진함으로써 동독의 인권개선을 이룩했던 점을 상기한다면, 남북간에도 인권문제의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면 비공개적 협상정책을 적절히 병행해야 할 것이다. 인권사안은 정치적 협상을 시도하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한주민들의 인권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경제협력과 지원에 대해서는 이 문제와 분리하여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2. 유엔 및 國際人權團體를 통한 對北 人權政策 推進

북한의 인권문제를 유엔을 통해 다루기 위해서는 ① 북한 인권문제가 유엔의 정식 의제로 상정되고 결의안이 채택되며, ②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특별보고관이 임명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인권위원회를 통해 이산가족들과 납북자 가족들이 유엔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보냄으로써 인권위원회가 개입하도록 유도하며, 점차 정식의제로 상정되고 대북결의안이 채택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활용할 수 있는 의제로는 이산가족문제 이외에 납북자 문제, 시베리아 별목장 인권침해 문제, 북한내 특별수용소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북한인권문제가 보다 심도있게 취급되기 위해서는 궁

극적으로 제2장에서 설명한 유엔의 '1503절차'에 의해 인권 문제가 다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이다. 아직까지 '북한인권문제 특별보고관'이 임명되어 있지 않으며 인권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심각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확인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북한인권문제가 남한인권문제와 맞물려 있어서 남한측이 북한의 인권문제를 적극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으나, 93.2 문민정부 출범 후에는 팔목할 만한 인권개선으로 부담감이 완화되고 있다.<sup>112)</sup>

북한은 B규약 제41조, 즉 의무불이행 당사국에 대한 인권위원회의 심리 권한 인정조항을 유보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을 통한 대북 인권압력은 법적 구속력이 결여되어 있어 실질적인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sup>113)</sup> 그러나 유엔에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회원국의 관심을 모으고 세계여론을 주도하는 것은 그 해결에 있어 정치적 영향력의 증대와 도덕적 명분의 축적이라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북한의 인권문제가 이처럼 유엔의 중심사안으로 격상되기 위해서는 국제인권단체들의 역할과 협력이 필요하다. 국제적

112) 남한은 1992년 B규약 심의과정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권고를 받은 바 있으며, 지난 5월 A규약 심의결과 교원노조, 공무원노조 결성을 허용하라는 권고를 받은 바 있다.

113) 최성철, "국제기구를 통한 남북역류자 송환방안 모색," p. 163.

으로 활동하는 민간기구(NGO)를 통해 유엔인권위원회에 호소하는 것은 효과가 크다. 왜냐하면 인권위원회가 탄원서를 접수하면 그 내용을 점검하여 해당국에 통보함과 동시에 매년 활동을 정리하여 연간활동보고서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북한이 자국의 인권상황이 국제사회에 알려지는 결과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사면위원회, 아시아감시위원회와 같은 NGO를 통해 북한의 인권문제를 제기하도록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협력체제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적 인권보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북한의 인권개선을 도모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1994년 7월 20일 서울에서 열린 제3차 유엔 아·태지역 인권워크숍에서 합의된 아·태지역 인권회의의 정례화와 지역인권기구의 설립 목표의 구체화는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의 하나로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유럽인권조약,’ ‘미주인권협약,’ ‘아프리카 인권헌장’ 등과 같이 아·태지역에서의 지역적 인권보장을 위한 방안의 하나가 될 것이다.<sup>114)</sup> 이같은 지역적 인권보장을 위한 협약들은 국제적 차원에서의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로서 발전되고 그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 있다. 아·태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인권조약을 채택하고 지역

114) 장명봉, “북한의 기본권보장의 제도적 문제점,” 『통일연구논총』, 제3권 제2호 (1994), pp. 197~99.

내 인권상황을 모니터할 수 있는 인권보장기관을 설립함으로써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고 북한의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노력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 3. 北·美, 北·日修交와의 連繫

북·미 관계개선시 북한내 외국인들에 대한 여행통제를 완화하고 자유로운 취재를 보장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북한에 인권압력을 가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일 것이다. 북한이 현재까지는 북·미간 연락사무소 개설을 지연시키고 경수로 건설 지원에서 미국의 적극적 개입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북·미간 연락사무소가 개설되고 평화체제 및 수교 문제가 거론되는 시점에서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연계시키고 외국인들의 여행규제 완화와 자유로운 언론활동 보장을 요구함으로써 북한의 인권개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북·일 관계개선 협상에서 북송일본인처들의 방일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일본에 요구함으로써 북한의 인권개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당시 일본적십자사와의 북송협정에서 2~3년 만에 일본을 방문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그동안 실행하지 않았다. 근래에 들어 김일성은 1990년 9월 말 평양을 방문한 일본 자민당의 가네마루 신 전 부수상과 만난자리에서 “일본인처들의 방일을 환영한다”고 발

언하였다.<sup>115)</sup> 또 1991년 1월 평양에서 열린 북·일 제1차 수교 본회담에서 북한측 수석대표인 전인철은 “희망자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방일을) 실현시키겠다”고 말했고, 김용순은 95년 6월 20일 방북한 이노키 간지 참의원 의원에게 북·일국 교정상화의 현안 가운데 하나인 북한거주 일본인처의 고향 방문 문제에 대해 “친족방문의 형태라면 가능하다”고 말함으로써 유연한 자세로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sup>116)</sup>

이러한 약속에 대해 구체적인 조치는 아직 아무것도 없었으나 이 약속에 대해 일본정부 및 일본적십자사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북·일수교의 현안으로 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일본으로 하여금 북송일본인처들의 방일을 실현시키도록 요구할 수 있다.<sup>117)</sup> 구소련의 인권 문제가 소련 내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의 해외이주문제로부터 국제적으로 확산되었음을 상기한다면 북한 내에 가장 두드러진 사회적 이질집단인 북송일본인처들의 인권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북한의 인권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접근방법일 수 있다. 일본인처들의 본국방문

115) 「동아일보」, 1991.3.10.

116) 「서울신문」, 1995.6.21. 북한은 현재 북송일본인처들의 소재 파악을 진행중인 것으로 보인다.

117) 일본이 북송교포의 일본인처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이유는 이 문제가 일본내 조선인의 법적 지위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성사된다면 이는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 4. 南北 人權協商 推進

남북한간의 인권협상은 먼저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목표로 추진해야 한다. 현재 남북간에는 ‘남북기본합의서’ 제18조에서 이산가족문제 및 인도적 문제의 해결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남북교류·협력 부속합의서’ 제15조에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은 ‘기본합의서’와 ‘교류협력 부속합의서’의 원칙에 따라 인도적 차원에서 이산가족들의 왕래와 상봉문제를 최우선적으로 거론해야 한다.<sup>118)</sup>

이산가족문제는 가족재결합이라는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

118) 남북한은 이산가족의 상봉과 서신왕래를 우선 중국과 같은 제3국에서 실현시킬 수 있고, 점차적으로 이산가족 면회소와 우편물교환소 등을 제3국 혹은 판문점에 설치하여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이산가족 노부모의 방북을 우선적으로 실현시키고 고향방문 정례화, 주민왕래 등을 단계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 제성호, “남북이산가족문제의 법적 성격과 해결방안,” 『통일문제연구』, 제5권 제1호 (1993).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지만 북한내 가장 광범위한 인권유린 집단이 바로 이산가족이라는 점에서 대북 인권정책의 핵심적 사안으로 부각시켜야 한다. 이산가족은 북한에서 복잡군중으로 성분이 분류되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차별대우와 억압을 받는 등 성분정책으로 많은 희생을 당한 집단이다. 북한이 이산가족문제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회피하고 있는 것은 체제유지와 관련하여 북한의 국내정치적 부담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과 방문이 이루어졌을 경우 북한체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여 이산가족문제를 회피하려고 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이산가족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고국 방문 혹은 고향방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이산가족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산가족 상봉과 재결합 문제를 대북 인권정책의 중심적 사안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납북자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송환요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1955년 5월의 대성호 납북으로부터 1987년 1월의 제27동진호 납북자들과 미확인 납북자 37명을 포함하여 94년 8월 현재 475명의 납북자들이 억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119)</sup> 그러

119) 통일원, 「북한의 인권실태」, pp. 136~61. 납북자 총수 475명 중 사망인원을 제외한 실억류자는 466명이다. 이외에 최근 95년 5월 30일 북한에 피랍된 '제86우성호' 선원 8명중 2명이 사

나 현재 대부분의 납북자들에 대한 소재, 입북의 자발성 여부 등에 대해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납북자들에 대한 송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납북자 신원파악, 소재파악, 자진월북여부 등에 대한 자료를 면밀히 수집하는 작업이 필요하다.<sup>120)</sup>

이산가족과 납북자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남한은 북한의 출소 공산주의자 송환 요구를 이 문제와 연계시키면서 체계적인 대응을 해 나가야 한다. 현재 남한은 함세환·김인서·김영태 등 3명의 출소 공산주의자를 송환할 경우 동진호 선원과 고상문 등 12명의 납북자 송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121)</sup> 그러나 북한은 납북자들을 의거 입북자로 주장하며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다. 북한측의 입장에서 보면 납북자들중 상당수를 의거입북자로 선전해 놓았으며 이들을 송환할만한 사회구조적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대북한 인권압력이 첨예화되기 전까지는

---

망하고 나머지 6명이 또 억류되어 있으며, 동년 7월 납북된 여의도 순복음교회 안승운 목사를 포함하면 실억류자는 473명이 된다.

120) 납북자 송환을 위한 남북간의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전현준, “납북자에 대한 남북 쌍방간의 해결방안 모색,” 통일원, 「사회문화분야 '94년도 전문가 위촉과제 종합」, pp. 187~90 참조.

121) 유영욱, “북한의 비전향장기수 송환요구에 대한 우리측 대응 모형,” 위의 책, p. 65.

납북자의 송환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남한은 출소 공산주의자를 무조건 송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파급효과를 노리는 것도 현실적인 방안으로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출소 공산주의자를 송환시킴으로써 북한이 얻는 선전효과를 지나치게 우려할 것이 아니라 출소 공산주의자를 보낼 만큼 여유있는 남한의 정치체제를 간접적으로 북한주민들에게 선전하는 잠재효과를 고려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대안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들에 대해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조건없는 송환을 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의 힘'을 후세에 입증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가 될 것이다.<sup>122)</sup>

이런 각도에서 볼 때 이산가족상봉과 납북자 송환 등을 포함하여 북한의 실질적인 인권개선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틀 내에서 보다는 국제기구를 통해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앞에서 설명한대로 유엔인권위원회나 국제적십자사에 이산가족을 포함하여 납북자 가족들이 탄원서를 제출하고 이를 위한 국제여론을 조성할 수 있다. 북한이 납북자들을 억류한 채 출소 공산주의자를 북송하라고만 요구하는 것은 형평의 원리에 맞지 않음을 밝혀야 할

122) 민경일, “김인서·함세환 관련 북한측 주장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및 대응방향,” 위의 책, p. 92.

것이다.<sup>123)</sup>

이와 같은 대북 인권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통합적 인권관리기구의 운영이 필요하다. 이러한 취지에서 정부는 1994년 12월 대통령 공약사업 실천의 일환으로 통일원산하 연구기관인 민족통일 연구원에 「북한인권 정보자료 센터」를 설치하였고, 95년 5월 16일에는 「북한인권대책 실무조정회의」를 구성함으로써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함은 물론 북한 인권 실태에 관한 자료의 수집·분석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 「인권정보자료센터」를 서독의 ‘인권기록보관소’와 같은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서독의 경우 잘츠기터에 ‘동독지역 정치적 폭행사태 기록보존소’를 설치하여 동독지역에서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문서로 보관하였다.<sup>124)</sup> 이러한 작업을 함으로서 동독정부가 동독주민에 대해 가혹행위를 억제하도록 하는 효과를 거둠으로써 동독지역 주민의 인권개선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정부는 또한 95년 3월 북한의 인권문제를 UN 등 국제기

123) 또한 조창호 소위 등 한국전쟁중 미귀환한 포로문제를 조사하기 위한 ‘국제조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유엔인권위에 제소하여 북한측의 주장에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124) 제성호, “한국의 대북 인권정책 방향,” 「북한연구」, 제6권 제2호 (1995 여름), p. 85.

구와 인권단체에 호소하기 위한 상설기구를 민주평통자문위에 설립하였다.<sup>125)</sup> 이 기구는 해외 거주국별로 이산가족 상봉 문제와 북한 인권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시키고 북한의 민주화와 개방을 촉구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인권대책 종합기구를 통해 정부는 민간인권단체들 및 국제인권기구와 연대활동을 강화하고 정보제공 및 정보교환을 확대해 나가며, 이들에게 북한의 인권실태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와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북한에 직접, 간접으로 인권개선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

125) 「서울신문」, 1995.3.4. 미국, 일본 등의 평통 해외 협의회장단 14명과 국내 직능, 지역자문위원 등 유관인사 30명으로 구성된 이 기구는 이미 지난 3월 중순 LA, 뉴욕, 워싱턴을 방문하여 교포사회 지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뉴욕 UN대표부 관계자들과 이 기구의 구성문제를 논의하였다.

## 第Ⅶ章 結 論

지금까지 사회주의 인권정책이라는 틀 속에서 북한의 인권개념과 인권실태를 살펴보고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압력과 북한의 대응, 그리고 향후 전망 및 대책을 살펴보았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인권의 보편성을 인정하지 않고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라는 생존권적 기본권을 우선적으로 주장하면서 자유롭고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는 데서 가장 기본적인 정치적·시민적 권리보호를 도외시하였다. 그러나 국제인권규약의 제정과 인권감시기구들의 확대로 사회주의권의 인권정책은 점차 정당성을 잃어가고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권의 인권개념을 채택하고 있으며 통제적이고 억압적인 인권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국제기구와 단체 및 주변국 등 국제사회로부터 심각한 비난을 받아 왔다. 북한은 탈냉전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한 인권문제 제기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국가들이 북한체제를 전복시키려는 목적에서 정치적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체제존립과 관련된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북한은 이에 대해 중국식의 대응패턴을 따라 '우리식 인권'이라는 사회주의 인권개념을 내세워 반격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의 비난과 압력에 대해 과거의 강경일변도에서 탈피하여 부분적으로 수용하거나 유화적 조치를 강구하는 등 보

다 유연하고 조직적으로 대처하는 이중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북한이 최근들어 국제사면위원회에 이전과는 다른 협조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도 특정 서방국가가 아닌 국제인권기구와의 대화를 추진함으로써 서방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국가적 자존심의 손상을 피하면서 인권개선 노력을 부각시킬 수 있는 효과도 얻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남한의 출소 공산주의자 송환을 집요하게 요구함으로써 인권문제의 화살을 남한으로 돌리고 인권압력을 피하는 정치적 카드로 사용하고 있다. 이같은 유화적 제스처와 이중전략은 서방으로부터 인권의 사각지대라는 지탄을 받아온 자국내 인권문제를 희석시키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 때 김정일 정권은 앞으로 미국 등 서방의 인권개선 요구를 자국에 대한 내정간섭이라고 비난하면서도 국제인권기구와의 부분적 협력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미국과 서방의 인권압력에 대응해 나갈 것이 분명하다. 한편 대내적으로는 아직 체제에 저항하거나 인권개선을 요구할 만한 집단이나 조직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경직된 성분정책과 스포츠, 예술, 민속명절과 같은 문화생활에서는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김정일이 새로운 사회통합 이데올로기로 내세우고 있는 ‘광폭정치’를 정당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개방화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대두됨에 따라 ‘자본주의적’ 자



유의 바람이 스며들어올 것에 대비하여, 서구의 정치적 다원주의와 시민적 자유의 요구를 미리 차단하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해 가고 있다. 따라서 정치적·시민적 권리에 대해서는 엄격한 통제와 처벌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분단국가로서 이산가족문제가 인권정책의 현안이 되었던 동독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이산가족문제를 해결하는 기본틀이 동독이 가입해 있던 CSCE체제가 되었다는 점에서 북한은 동독과는 다른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러시아와 동독은 CSCE와 UN 등 집단안전보장체제 내에서 인권문제를 정치군사적 및 경제적 협상과 병행함으로써 실질적인 결실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의 인권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CSCE와 유사한 동북아 지역 안보체제의 형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이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이 현재 가입하고 있는 기존의 유엔틀을 이용하거나 북·미, 북·일 수교협상 등 양자간 채널을 활용하고 정치군사적 혹은 경제적 협상과 연계하여 북한의 인권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러시아의 경우 유태인이라는 이질민족이 인권정책에 도전하는 촉발요인이었음을 감안해 볼 때 북한 내의 북송일 본인처들의 해외여행을 허가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전략일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북한은 사

회적 갈등집단과 불만세력을 무마하기 위해 제한적으로나마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자유공간을 허용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내에서 사상과 성분 때문에 차별당하며 인권을 유린당하는 이산가족과 납북자, 북송교포 등의 사회집단에 대해 객관적이고 경험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국제인권단체들과 정보교류 및 협력체제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권정책을 접근함에 있어서 UN이나 국제인권기구들의 역할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음을 또한 직시해야 한다. 인권에 관한 조사가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해당국 정부에 시정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를 요구하거나 강제할 수는 없다. 유엔인권레짐은 국제적인 보편적 인권규범의 제정과 기준설정,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정보교환에 치중한 레짐이며, 이행에 관한 역할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이행활동은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권에 대한 관심이 전지구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유엔의 각종 인권규범들이 다른 영역의 문제를 자극하는 연쇄반응적 효과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도덕적 상호의존'에 기대를 걸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국제인권단체와 기구들은 북한인권의 심각한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림으로써 도덕적 압력을 가하는데 주력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국제인권규약 A규약과 B규약에 가입

했지만 제2장에 언급한 바와 같이 B규약 선택조항 제41조와 B규약선택의정서의 가입을 유보하고 있다. B규약 선택조항인 제41조는 이 선택사항을 수락하면 이 규약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다른 당사국(선택조항 수락국)에서 주의를 환기하는 통보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두 나라 사이의 해명·조정이 이루어지며,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그 사안을 유엔인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리토록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또 B규약선택의정서는 B규약이 규정하고 있는 권리를 침해당한 개인이 인권이사회에 통보해 심리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인권이사회가 심리를 거쳐 얻은 견해를 관련 국가와 개인에게 송부하는 절차를 정하고 있다. 북한은 이를 유보하였기 때문에 북한에서 어떤 개인이 인권을 침해당했을 경우 B규약 선택의정서 규정에 따른 규제는 불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대북 인권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인권문제의 정치적 성격을 명확히 인식하고 현실성있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인권문제가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추구한다는 면에서 보편성을 띠고 있음은 사실이지만 제2장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사회주의는 인권의 개념과 실현방법에 있어서 사회주의의 집단주의적 체제 이데올로기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북한의 인권문제도 북한체제의 존립과 관련되는 민감한 정치사안이며 북한이 체제수호를 걸고

대응하고 있는 근본적인 체제문제이다.

더욱이 동서냉전시대에 인권문제가 '정치화'(politicized)됨으로써 인권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왜곡했던 면이 많았던 점도 인권의 보편성만을 주장하며 단도직입적으로 북한의 인권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을 감안해 볼 때 북한의 인권문제는 좀더 신중하고 거시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인권문제의 정치성과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충분히 이해하고, 국제사회에서 대북한 인권문제가 남북한간의 정치적 공방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논리적이며 합리적인 대북 인권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參 考 文 獻

### 1. 單行本

- 강철환·안혁. 「대왕의 제전 1」. 서울: 香實, 1993.
- 국제사면위원회. 「북한: 국제사면위원회의 우려」. 국제사면위원회 사무국, 1993.10.
-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연락위원회. 「인권이란 무엇인가」. 서울: 불레출판사, 1988.
- 길정우·신상진·이유진·여인곤. 「미국 클린턴 행정부의 동북아정책과 동북아 질서 변화: 1990년대 동북아질서 예측(Ⅲ)」.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 金昞默·尹明善. 「人權과 歷史」. 서울: 螢雪出版社, 1987.
-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3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6.
- . 「김일성저작집 3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 북한문제연구소. 「평양축전 참관자들을 통해서 본 북한의 실상」. 서울: 북한문제연구소, 1995.
- 북한연구소. 「북한은 과연 인권이 있는가?」. 서울: 북한연구소, 1989.
- . 「북한의 가족법과 가정실태」. 서울: 북한연구소, 1991.
- . 「북한형법의 실상」. 서울: 북한연구소, 1990.

- 아르만도 발라다레스 지음. *Against All Hope: The Prison Memoirs of Armando Valladares*. 6th ed. 정성호 옮김. 「자유의 조건」, 제1권 및 제2권. 서울: 나남, 1987.
- 아시아감시위원회·미네소타변호사 국제인권위원회. 송철복 외 역. 「북한의 인권」. 서울: 고려원, 1990.
- 전현준. 「북한의 인권실태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 통일원. 「북한의 인권실태」. 서울: 통일원, 1994.
- . 「사회문화분야 '94년도 전문가 위촉과제 종합」. 서울: 통일원, 1994.
- 평화문제연구소. 「북한의 인권백서」. 서울: 평화문제연구소, 1991.
- 한상범. 「기본적 인권」. 서울: 정음사, 1985.
- . 「인권: 민중의 자유와 권리」. 서울: 敎育科學社, 1991.
- 한양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북한의 인권: 실상과 국제사회의 역할」. 한양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술심포지움 논문 및 토론집, 1994.11.9.
- Amnesty International. *Amnesty International Report 1995*. London: AI, 1995.7.
- Brunner, Georg, et al. *Before Reforms: Human Rights in the Warsaw Pact States 1971-1988*.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0.

- Buergenthal, Thomas.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 a Nutshell* (1988). 양건·김재원 옮김. 「國際人權法 概論」. 서울: 教育科學社, 1992.
- Choi, Sung-Chull, ed. *Human Rights in North Korea*. Seoul: Center for the Advancement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1995.
- Claude, Richard and Bruns Weston, eds. *Human Rights in the World Community: Issues and Action*.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92.
- Donnelly, Jack. *International Human Rights*. Boulder: Westview Press, 1993.
- Harding, Harry. *A Fragile Relationship: The United States and China since 1972*.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1992.
- Humana, Charles. *World Human Rights Guide*. 3rd e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 Oraa, Jaime. *Human Rights in States of Emergency in International Law*. Oxford: Clarendon Press, 1992.
- Shaw, William, ed. *Human Rights in Korea: Historical and Policy Perspectives*. Cambridge: Harvard Council on East Asian Studies, 1991.
- The Institute for South-North Korea Studies. *Political Prisoner's*

*Camps in North Korea: Replicas of Stalinist Gulags.*  
Seoul: The Korea Herald Inc., 1993.

---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The Reality of Self-styled Paradise.* Seoul: ISNKS, 1995.

Vincent, R. J.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 ed. *Foreign Policy and Human Rights: Issues and Response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 2. 論 文

국제사면위원회. “국제사면위원회 93년 연례인권보고서, 북한관련 부분.” 통일원. 「북한의 인권실태」첨부 (1994), pp. 78~102.

—————. “국제사면위원회 94년 연례인권보고서, 북한관련 부분.” 통일원. 「북한의 인권실태」첨부 (1994). pp. 103~109.

—————. “국제사면위원회 95년 연례인권보고서, 북한관련부분.” 1995.7.

—————. “방북보고서.” 1995.6.



- . “북한 정치범에 관한 새로운 정보.” (1994.7.30).  
통일원. 「북한의 인권실태」 첨부 (1994). pp. 110~121.
- 김동한. “북한 헌법상의 기본권 조항 변천에 관한 고찰.” 「북  
한연구」, 제6권 제2호 (1995 여름), pp. 24~42.
- 김성윤. “독일연방(서독)의 대독일민주공화국(동독) 인권정  
책 사례.” 「사회문화분야 94년도 전문가 위촉과제 종  
합」. 서울: 통일원, 1994. pp. 3~23.
- 김영중. “북한의 정치부패와 인권,” 「북한연구」, 제6권 제2호  
(1995 여름), pp. 44~60.
- 김일성. “우리나라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  
자.” 1990.5.24.
- . “우리 당 사법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김일성저  
작집 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 김정일. “사상사업을 앞세우는 것은 사회주의 위업 수행의  
필수적 요구.” 「조선중앙방송」, 1995.6.20.
- .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로동신문」, 1994.11.4.
- .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평양: 조선  
로동당출판사, 1992.
- 김창렬. “제국주의자들이 떠벌이고 있는 <인권옹호>와 그 반  
동적 본질.” 「근로자」 (1990.2), pp. 92~96.
- 김학준.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 「북한

- 의 인권: 실상과 국제사회의 역할」. 한양대학교 사회  
과학대학 학술심포지움 논문 및 토론집, 1994.11.9.
- 리재도. “제국주의자들의 <인권옹호>는 지배와 예측의 기만  
적 구호.” 「근로자」 (1978.8).
- 민경일. “김인서·함세환 관련 북한측 주장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및 대응방향.” 「사회문화분야 94년도 전문가 위  
촉과제 종합」. 서울: 통일원, 1994. pp. 81~92.
- 박홍순. “탈냉전시대의 인권, 유엔, 한국.” 95한국정치학회 5  
월 월례발표회(1995.5.20) 논문.
- 백응진. “김정일비서의 논문 ‘사회주의는 과학이다’에 대한  
평가.” 「통일한국」 (1995.7).
- 심익섭.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 「사회문화분야 94년도 전  
문가 위촉과제 종합」. 서울: 통일원, 1994. pp. 93~106.
- 안명혁. “미제는 세계최대의 인권유린자.” 「근로자」 (1990.8).  
pp. 91~96.
- 유영옥. “북한의 비전향장기수 송환요구에 대한 우리측 대응  
모형.” 「사회문화분야 94년도 전문가 위촉과제 종합」.  
서울: 통일원, 1994. pp. 51~80.
- 李長熙. “Helsinki 「인권규정」이 분단국가에 주는 의미.” 「통  
일문제연구」, 제1권 제3호 (1989 가을). pp. 33~70.
- 장명봉. “북한의 기본권보장의 제도적 문제점.” 「통일연구논  
총」, 제3권 제2호 (1994). pp. 169~203.

전인철. “제국주의자들의 <평화적 이행>전략은 파산을 면치 못한다.” 「근로자」 (1990.11). pp. 85~90.

정동욱. “<평화>와 <완화>의 막뒤에서 감행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책동.” 「근로자」 (1990.3). pp. 92~96.

제성호. “남북이산가족문제의 법적 성격과 해결방안.” 「통일문제연구」, 제5권 제1호 (1993).

———. “한국의 대북 인권정책 방향.” 「북한연구」, 제6권 제2호 (1995 여름). pp. 62~89.

조용환. “국제적 인권보호제도와 이용가능성.”

최성철. “국제기구를 통한 남북억류자 송환방안 모색.” 「사회문화분야 94년도 전문가 위촉과제 종합」. 서울: 통일원, 1994. pp. 153~179.

허종호.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 이론」.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6.

Amnesty International. “China.” in *Amnesty International Report 1994*. London: AI, 1994. pp. 98~101 및 1985년 이후 각년도.

———. “Korea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in *Amnesty International Report 1995*. London: AI, 1995. pp. 183~185.

- Beer, Lawrence W. "Comparative Perspectives on Human Rights in Korea." in William Shaw, ed. *Human Rights in Korea: Historical and Policy Perspectives*. Cambridge: Harvard Council on East Asian Studies, 1991. pp. 265~282.
- Beijing Review. "Asia's Major Human Rights Concerns." *Beijing Review* (April 19~25, 1993).
- . "China's View on the Final Document." *Beijing Review* (May 31~June 6, 1993).
- . "Human Rights in China." *Beijing Review* (December 12~18, 1994).
- . "Proposals for Human Rights Protection and Promotion." *Beijing Review* (June 28~July 4, 1993).
- . "Right to Subsistence Should Be Given Priority." *Beijing Review* (June 21~27, 1993).
- . "Western Views on Human Rights Opposed." *Beijing Review* (July 6~12, 1993).
- Chew, Melanie. "Human Rights in Singapore." *Asian Survey*, vol. 34, no. 11 (November 1994). pp. 933~948.
- China News Analysis. "China and Human Rights." *China News Analysis* (September 15, 1994).
- Choi, Sung Chul. "Human Rights in North Korea: Related Laws and Systems." *East Asian Review*, vol. 6, no. 4 (Winter

- 1994). pp. 88~107.
- Copper, John F. "Peking's Post-Tianenmen Foreign Policy: The Human Rights Factor." *Issues & Studies* (October 1994).
- Imig, Douglas R. and Pamela Slavsky, eds. "Nonviolent Sactions Seminars." Published by Program on Nonviolent Sactions and Cultural Survival, Center for International Affairs, Harvard University, Fall 1994.
- International Human Rights League of Korea. "A Report on the Conditions of South Korean Prisoners of War Detained in North Korea." *IHRLK Report*, 1994.
- 
- \_\_\_\_\_. "A Report on the North Korean Refugees." *IHRLK Report*, 1994.5.
- Lee, H. S. "North Korea's Closed Economy: The Hidden Opening." *Asian Survey*, vol. 28, no. 12 (December 1988).
- Marshall, T. H. "Citizenship and Social Class."
- Marx, Karl. "On the Jewish Question." in Robert C. Tucker, ed. *The Marx-Engels Reader*, 2nd ed. New York: W.W. Norton & Company, 1978. pp. 26~52.
- Neher, Clark D. "Asian Style Democracy." *Asian Survey*, vol. 34, no. 11 (November 1994). pp. 949~961.
- Weston, Buns H. "Human Rights." in Richard P. Claude & Buns

H. Weston, eds. *Human Rights in the World Community: Issues and Action*.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89.

### 3. 其他

부르토스 갈리. “인권의 보편성이 흔들린다.” 「중앙일보」.  
1993.6.22.

「내외통신」. 1995.2.9; 1995.2.10.

내외통신사. “생존 헬기조종사 송환관련 동향.” 「내외통신 주  
간판」, 제934호 (1995.1.5).

———. “정치적 속셈으로 열리는 대외문화행사.” 「내외  
통신 종합판(55)」 (1995.1.3~3.31). pp. 287~290.

———. “외화획득에 목적을 둔 프로화.” 「내외통신 주  
간판」, 제947호 (1995.4.6).

———. 「북한조감」. 서울: 내외통신사, 1994.

「동아일보」. 1991.3.10; 1995.2.25; 1995.7.10; 1995.8.8.

「로동신문」. “인권침해 최대주범은 ‘정부.’” 1995.4.9.

———. “남조선 비전향장기수들의 송환과 관련하여  
국내외 기자회견.” 1995.4.13.

———. “사회주의는 과학이다.”(김정일논문) 1994.11.4.

———. “참다운 인권을 옹호하여.” 1995.6.24.

- 미국무부. “1993년 인권보고서 북한관련 부분(1994.2).” 통일원. 「북한의 인권실태」 첨부(1994). pp. 122~135.
- 사회과학원. 「경제사전」, 제1권.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 . 「정치용어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0.
- . 「조선말대사전 (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 「서울신문」. 1995.3.4; 1995.6.21.
- 「세계일보」. 1995.5.17.
- 「인민일보」. 1992.5.10; 1993.3.9.
- 「조선일보」. 1995.5.26.
- 「조선중앙방송」. “외교부대변인의 인권문제에 관한 담화 발표.” 1995.2.8.
- . “사상사업을 앞세우는 것은 사회주의 위업 수행의 필수적 요구.” 1995.6.20.
-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9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1.
- 통일원. “영공개방 및 국제항공협정 가입 방침 표명(12.22).” 「월간 북한동향」, 제162호 (1994.12). pp. 89~94.
- . “외교부 대변인,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 극렬 비난 (2.9).” 「월간 북한동향」, 제164호 (1995.2). pp. 95~97.
- . “북송교포의 ‘행복한 생활’ 선전(6.20).” 「월간 북한

동향」, 제168호 (1995.6). p. 86.

———. “「사회개발정상회의」 북측대표단 참가동향(종합).”

「월간 북한동향」, 제165호 (1995.3). pp. 90~91.

———. “세계인권회의와 북한의 인권상황.” 「월간 북한동

향」, 제144호 (1993.6). pp. 57~63.

———. “제국주의자들이 ‘인권에 이중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고 비난(6.24).” 「월간 북한동향」, 제168호 (1995.6). p.

87~89.

———. 「주간 북한동향」. 1995.1.5; 1995.1.19.

「평양방송」. 1994.11.5; 1995.6.20.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Consider This Broader Set of Rights.” June 25, 1993.

U.S. Department of Stat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1993 Human Rights Report).” February 1994.



빈 면

## ◎ 發刊資料目錄 案內 ◎

## 〈세미나시리즈〉

- 91-01 轉換期の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
- 91-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 91-03 北韓體制的 變化: 現況과 展望
- 92-01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 92-02 북한의 權力構造와 金日成 이후 政策方向 전망
- 92-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 92-04 韓半島 周邊4國의 對北韓政策
- 92-05 轉換期の 南北韓關係: 現況과 展望
- 93-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 93-02 北韓 核問題: 展望과 課題
- 93-03 中國의 改革·開放
- 93-04 北韓開放에 대한 周邊4強의 立場
- 93-05 南北韓 關係 現況 및 94年 情勢 展望
- 94-01 北韓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展望
- 94-02 南北韓關係와 美國
- 94-03 예멘 統一의 問題點
- 94-04 金日成사후 北韓의 政策展望과 우리의 統一方案

- 94-05 統一文化와 民族共同體 建設  
 94-06 南北韓關係 現況 및 95年 情勢展望  
 95-01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方案 摸索  
 95-02 남북화해·협력의 실천지표: 「민족발전공동계획」

〈研究報告書〉

- 91-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91-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91-03 美國聯邦制 研究: 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91-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對한 對應方向  
 91-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  
     정상회담과 기본조약체결 사례 중심  
 91-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91-11 在野統一案 研究  
 91-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  
 91-13 北韓體制的 實相과 變化展望  
 91-14 「한민족공동체」具體化方案 研究:  
     社會·文化·經濟 交流·協力 中心  
 92-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 92-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 北韓의 中國式 改革·開放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 92-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를 중심으로
- 92-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Ⅱ)
- 92-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2-06 軍備統制 檢證 研究: 理論 및 歷史와 事例를 中心으로
- 92-07 北韓住民의 人性研究
- 92-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研究
- 92-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 92-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 92-11 東北亞 經濟協力的 發展方向
- 92-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研究: 統一關聯 財政政策 中心
- 92-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 92-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  
社會·文化的 同質性 增大方案 中心
-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 92-16 東北亞 新國際秩序下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
- 92-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 93-01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3-02 金日成著作 解題
- 93-03 日本의 對北韓政策

- 93-04 中國의 改革·開放 加速化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Ⅳ)
- 93-05 中·臺灣關係의 現況과 發展方向
- 93-06 美國 클린턴 行政府의 東北亞政策과 東北亞秩序 變化: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Ⅲ)
- 93-07 東北亞 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應策
- 93-08 獨逸統一後 東獨地域에서의 私有化政策 研究
- 93-09 對北 投資保護 및 紛爭解決方案 研究
- 93-10 脫冷戰期 北韓의 對中國·러시아 關係
- 93-11 北韓 軍事政策의 展開樣相과 核政策 展望
- 93-12 北韓의 人權實態 研究
- 93-14 베트남 統合事例 研究
- 93-15 金正日著作 解題
- 93-16 韓半島 軍費統制方案 研究: 유럽 軍費統制條約의 示唆點과  
관련하여
- 93-17 北韓 家族政策의 變化
- 93-18 主體思想의 理論的 變化
- 93-19 예멘 統合事例 研究
- 93-20 北韓 政治社會化에서 傳統文化의 役割:  
北韓映畫分析을 中心으로
- 93-21 북한의 에너지 수급실태 연구
- 93-22 北韓 國營企業所의 管理運營體系

- 93-23 社會主義體制 改革·開放 事例 比較研究
- 93-24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改訂版)
- 93-25 「한민족 공동체」形成過程에서의 僑胞政策
- 93-26 日本의 核政策
- 93-27 東北亞의 新經濟秩序
- 93-28 러시아聯邦의 對北韓政策
- 93-29 南北韓 政治共同體 形成方案 研究
- 93-30 統一論議의 變遷過程 1945~1993
- 94-01 북한 관료부패 연구
- 94-02 美國과 日本의 對北韓 關係改善과 南北韓關係
- 94-03 韓國의 對러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04 中·臺灣의 統一政策 比較研究
- 94-05 北韓의 社會間接資本 實態分析
- 94-06 主體思想의 內面化 實態
- 94-07 金正日 리더십 研究
- 94-08 北韓 民族主義 研究
- 94-09 金正日의 軍事權力基盤
- 94-10 韓國의 對中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11 中國과 日本의 軍事力 增強이 韓半島安保에 미칠 影響
- 94-12 統一韓國의 政黨制度와 選舉制度
- 94-13 南北聯合 形成 및 運營 方案研究
- 94-14 金正日體制的 對南政策 展望

- 94-15 北韓과 中國의 經濟關係 分析
- 94-16 北韓 指導部の 情勢認識 變化와 政策展望
- 94-17 북한의 대외경제개방정책 현황과 전망
- 94-18 統一韓國의 對外經濟協力 方向:  
亞·太地域 多者間協力 關聯
- 94-19 1994年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4-20 「조선전사」解題
- 94-21 1995年 NPT延長會議와 韓國의 對策
- 94-23 北韓 住民들의 價値意識 變化: 蘇聯 및 東歐와의 比較연구
- 94-24 韓國 民族主義 研究
- 94-26 中國과 北韓의 政治體制 比較研究: 黨·軍關係의 變化와 關聯
- 94-27 統一韓國의 登場에 따른 東北亞地域 安保構造 變化 對應策
- 94-28 南北韓 文化政策 比較 研究
- 94-29 南北韓 協商行態 比較研究
- 94-30 南北韓 特殊關係의 法的 性格과 運營方案
- 94-31 統一韓國의 權力構造
- 94-32 統一韓國의 社會福祉政策
- 94-33 統一韓國의 政治理念
- 94-34 統一以後 國民統合 方案 研究
- 94-35 統一韓國의 經濟體制
- 94-36 國際機構를 통한 南北韓 交流·協力增大 方案 研究
- 95-01 러·北關係 變化展望과 韓國의 對應方案

95-02 金正日 政權의 人權政策 變化展望

〈統一情勢分析〉

91-01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影響을 중심으로

91-02 고르바초프 權力的 現況과 展望

91-03 李鵬 中國總理의 訪北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影響을 중심으로

91-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結果分析

91-05 中·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91-06 北·日, 北·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

91-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91-11 엘친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響 分析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91-13 美·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安保에  
미치는 影響



- 92-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4個國 巡訪結果 分析:  
南·北韓關係와 관련하여
- 92-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 92-03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 92-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關係 展望
- 92-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 1992年 上半期
- 92-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 92-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開發代案 및 法制度 中心
- 93-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推移: 國民投票 結果를 中心으로
- 93-02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
- 93-03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1~6)
- 93-04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北韓의 對南政策
- 93-05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成展望과 南北韓關係
- 93-0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7~9)
- 93-07 中國의 核實驗이 國際 및 東北亞情勢에 미칠 影響
- 93-08 第5次 亞·太經濟協力體(APEC)會議를 계기로 본  
亞·太地域 協力の 發展方向
- 93-09 1993年 12月 黨 中央委 全員會議 및 最高人民會議 結果分析
- 94-01 美國의 對韓半島 政策: 北韓 核問題와 美北關係改善을 中心으로
- 94-02 中國의 對北韓政策: 現況과 展望
- 94-03 북한의 대외개방 현황과 전망: 외자유치 관련법 제정을 중심으로
- 94-04 러시아의 權力構造 改編에 따른 對內·外政策 展望

- 94-05 北韓核問題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우리의 對中政策 方向
- 94-06 核關聯 北韓의 協商戰略戰術 分析
- 94-07 韓·日, 韓·中 頂上會談 結果分析
- 94-08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1~3)
- 94-09 北韓 最高人民會議 第 9期 7次會議 結果分析
- 94-10 韓·日關係 定立方案: 1994年 6月 頂上會談을 契機로
- 94-11 탈북자 발생 배경 분석
- 94-12 北韓의 南北頂上會談 提議 意圖 및 會談의 展望
- 94-13 무라야마(村山) 內閣의 對內外政策 展望
- 94-14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4~6)
- 94-15 金正日 政權의 登場과 政策 展望
- 94-1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7~9)
- 94-17 李鵬 總理의 訪韓結果 分析과 對中政策 方向
- 94-18 美國의 中間選舉 以後 對韓半島政策 變化展望
- 94-19 北韓의 變화와 金正日 政權의 將來
- 94-20 核·經協連繫 緩和措置와 北韓의 對應政策 展望
- 95-01 鄧小平 死後 中國의 國內政勢 및 韓半島政策 展望
- 95-02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5. 1~3)
- 95-03 中國의 政局展望: 第8期 全人大 3次大會 結果를 中心으로
- 95-04 金正日 承繼體制 鞏固化 動向
- 95-05 北韓의 食糧支援 要請背景과 對北韓 食糧支援 方案
- 95-06 金日成 死後 1年: 북한정세의 동향과 전망

## 〈世界主要事件日誌〉

91-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 ~ 1991. 6. 30)

91-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 ~ 1991. 9. 30)

91-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 ~ 1991. 12. 31)

92-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 1 ~ 1992. 3. 31)

92-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4. 1 ~ 1992. 6. 30)

92-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7. 1 ~ 1992. 9. 30)

92-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0. 1 ~ 1992. 12. 31)

93-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 1 ~ 1993. 3. 31)

93-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4. 1 ~ 1993. 6. 30)

93-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7. 1 ~ 1993. 9. 30)

93-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0. 1 ~ 1993. 12. 31)

94-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 1 ~ 1994. 3. 31)

94-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4. 1 ~ 1994. 6. 30)

94-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7. 1 ~ 1994. 9. 30)

94-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0. 1 ~ 1994. 12. 31)

95-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1. 1 ~ 1995. 3. 31)

95-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4. 1 ~ 1995. 6. 30)

〈年例情勢報告書〉

91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1~1992

92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2~1993

93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3~1994

94-01 北韓 核問題와 南北關係

94-02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4~1995

〈論叢〉

統一研究論叢 創刊號(1992. 6)

統一研究論叢 第1卷 2號(1992. 12)

統一研究論叢 第2卷 1號(1993. 7)

統一研究論叢 第2卷 2號(1993. 12)

統一研究論叢 第3卷 1號(1994. 8)

統一研究論叢 第3卷 2號(1994. 1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1(199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2(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3(1994)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4)

한독 WORKSHOP : ECONOMIC PROBLEMS OF NATIONAL  
UNIFICATION (1993)

한독 WORKSHOP : ECONOMIC PROBLEMS OF NATIONAL  
UNIFICATION (1994)

〈資料〉

92-01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國文篇)

92-02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外國語篇)

93-01 藏書目錄: 單行本·研究報告書

93-02 藏書目錄: 特殊資料

93-03 獨逸 統一條約 批准法律

94-01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上)

94-02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中)

94-03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下)

〈통일문화시리즈〉

94-01 統一文化研究(上)

94-02 統一文化研究(下)

---

---

金正日 政權의 人權政策 變化展望

研究報告書 95-02

---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北韓研究室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산 5-19

전화 : 237-9288, FAX : 232-5341

印刷處 오름시스템(주) 전화 : 273-7011

印刷日 1995년 9월 일

發行日 1995년 9월 일

---

---